

04

FOCUS ON MEDIA

언론조정중재제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 점검

54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셰어런팅(Sharenting)과 디지털 시대
아동의 권리 보호

78

Journalism & Ethics

인용한 정보의 정확한 출처로
독자를 안내하자



언론중재

2023 Autumn Vol.168

인쇄

2023년 9월 25일

발행

2023년 9월 30일

등록

1981년 10월 14일

등록번호

서울중바 00002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조준원

발행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1층

전화

02-397-3044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편집위원

이민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박아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장윤미 법률사무소 삼정 변호사

FOCUS ON MEDIA

언론조정중재제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 점검

1. 조정의 원리와 비밀유지 의무 04

이로리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2. 언론중재법상 조정 중 제소기간이 경과된 경우의 처리 18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3. 추후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 고찰 30

이예찬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 차장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 본지는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사건 속 법률

“네 고소” 기사로만 말하지 않는
기자들

김도연 미디어오늘 기자

46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셰어런팅(Sharenting)과 디지털 시대
아동의 권리 보호

박아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54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X(트위터) vs 스레드, 단문메시지
플랫폼의 경쟁이 의미하는 것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62

판례토크

당사자 스스로 공개한 전과를
기사화한 언론, 손해배상책임
부담할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2842

손해배상 판결 분석 –

장윤미 법률사무소 삼정 변호사, 前 언론중재위원

72

Journalism & Ethics

인용한 정보의 정확한 출처로
독자를 안내하자

이샘물 동아일보 디지털이노베이션팀장

78

해외통신원

‘저널리즘 로봇’ 실험하는 독일,
윤리적·법률적 쟁점은?

권용덕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84

특별기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언론조정, 이렇게 해볼까요?

최승재 변호사(법학박사), 서울제8중재부 중재위원

94

위원회 News

100



01

조정원리와 비밀유지 의무

이로리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1. 서론

조정(mediation)은 원래 미국 법원에서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유로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 해결 절차로 도입되어 소송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한다)로 지칭된다. 분쟁 해결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의 대립적인 구조는 권력, 자원,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ADR이 1970년대 미국에서 등장하였고, 이후 미국 법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조정절차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조정은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분쟁당사자에게 소송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빨리 분쟁을 해결하면서 당사자들의 필요, 이해관계를 다룬다. 또, 당사자간 관계를 보전하며, 법적 권리구제를 넘어선 분쟁 해결의 옵션들을 다룰 수 있고,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구제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적법절차와 실제적인 법규범에 근거한 공적 절차인 재판절차와 달리 ADR 절차는 절차적, 실체적 유연성을 갖는 신속하고, 간단한 사적인 절차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된다.¹⁾

이처럼 조정은 소송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로서, 조정절차에는 조정 고유의 분쟁 해결 원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사조정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을 포함한 국내 조정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조정' 자체를 정의하는 규정이 없다. 민사조정제도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분쟁 조정제도는 모두 조정이 당사자의 자율성에 근거한 분쟁 해결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인식되지 않으며, 당사자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역할이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조정절차 공개의 의사결정, 비밀유지 의무에 있어서 정작 조정당사자가 배제되는 경우들이 있다. 결국 당사자의 자율성에 근거한 분쟁 해결 절차라는 의미는 사실상 조정절차의 개시 여부, 조정기관(조정인, 조정부 또는 조정위원회 등)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가 수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조정절차는 사적인 절차로서 비공개, 비밀성(confidentiality)

¹⁾ Rabinovich-Einy, O. & Katsh, E. (2021).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Dispute Resolution. In Wahab, A. M., Rainey, D. & Katsh, E. (Eds.), Online Dispute Resolution: Theory and Practice, Eleven International Publishing, p.4.

이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조정절차의 비공개, 비밀성 원칙의 범위, 예외 등에 대하여 관련 국제법이나 국내법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각국의 조정법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다음에서는 먼저 조정의 정의를 통하여 조정의 목적과 원리, 성격을 먼저 살펴보고, 비밀유지의무의 의의와 기능을 검토하며, 국내 조정 관련법의 비밀유지의 의무 규정과 동의무의 범위와 예외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을 제시한다.

2. 조정의 정의와 원리

「민사조정법」을 포함한 국내 조정 관련 법률에는 ‘조정’ 자체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다. 이에 비해 조정 관련 국제조약이나 외국법에서는 조정에 관한 정의를 명확하게 둬으로써 조정절차의 성격과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유럽연합(EU) 역내 민·상사 분쟁 조정에 적용되는 EU의 국제 민·상사 조정 지침(2008)²⁾ 정의에 따르면, “조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둘 이상의 분쟁당사자들이 조정인(mediator)의 지원으로 분쟁 해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들 스스로에 의해 시도되는 구조화된 절차(structured process)”를 의미한다.³⁾ 동 조정지침의 이행법률로 독일에서 제정된 「조정법」(Mediationsgesetz)에 따르면, 조정은 당사자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조정인의 지원으로 그들의 분쟁을 자발적이며,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밀이 유지되고 구조화된 절차로 정의된다.⁴⁾

2020년 9월 12일 발효된 「UN국제조정화해합의협약」(일명 ‘싱가포르조정협약’(2018))⁵⁾은 조정에 대하여 “사용된 표현 또는 절차가 수행되는 근거

2) 2008년 5월 21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의 민사 및 상사조정특정 측면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이하 ‘EU 조정지침’이라 함). Official Journal L136/3 (May 21, 2008). 동 지침은 2008년 6월 13일 발효되었다. 지침은 지침이 추구하는 목적과 달성해야 할 원칙만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회원국의 재량에 맡기는 입법형식이다. 이로리 (2016). EU 조정지침의 이행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법제연구》, 제50호, p.223.

3) EU 조정지침 제3(a)조.

4) 2012년 7월 26일 「조정과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촉진을 위한 법」(Gesetz zur Förderung der Mediation und anderer Verfahren der außergerichtlichen Konfliktbeilegung). 2012년 7월 25일 공포, 7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5) 「UN국제조정화해합의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이하 ‘싱가포르조정협약’이라 함). 2018년 6월 25일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는 「국제상사조정 및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이하 ‘국제상사조정모델법’이라 함)을, 2018년 12월 20일 UN 총회는 UNCITRAL에서 협상된 싱가포르조정협약을 채택하고, 2021년 7월 14일 UNCITRAL은 조정규칙(UNCITRAL Mediation Rules)과 조정주석(UNCITRAL Notes on Mediation)을 채택하였다. 이로서 UNCITRAL, 즉 UN은 국제상사조정에 관하여 보편적인 법적 체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각 문서는 UNCITRAL 홈페이지 참조. URL: <https://uncitral.un.org/en/texts/mediation>

와 무관하게, 분쟁당사자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해결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 제3자 또는 제3자들의 지원을 받아 그들 분쟁의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시도하는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WIPO조정규칙⁶⁾에 따르면, “조정은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제3자(조정인)에게 그들의 분쟁에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협상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위 정의 규정을 근거로 조정절차의 특징을 규명할 수 있는데, 조정은 첫째, 당사자가 분쟁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둘째, 조정인의 역할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셋째, 조정의 목적은 분쟁에 대한 합의, 우호적인 해결 또는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조정절차가 당사자 중심의 절차이므로 당사자의 자발성, 자율성, 책임성이 조정절차의 특징으로 강조된다. EU 조정지침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시도하는 ‘구조화된 절차’로 정의하고 있고, 독일 「조정법」은 ‘비밀이 유지되는 절차’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조정이 추구하는 해결책은 기본적으로 판결과 같은 법적 근거, 정당성이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에서 조정절차는 구조화되고,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물론 조정절차에 법적 판단에 기반한 해결책(조정안)이 배제되지 않으며, 그러한 조정안은 그 내용의 객관적 기준, 공정성에 대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조정의 비공개 원칙 및 비밀유지 의무

3.1. 의의

조정은 사적 분쟁 해결 절차로서 조정절차의 비밀성은 조정의 본질적 특징이다. 따라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전제로 한다. 조정절차가 공개되면 당사자들이 솔직하게 대화할 수 없으며, 조정절차의 비밀유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조정절차에서 제시된 정보나 당사자의 발언이 추후 소송이나 중재절차

6) WIPO조정규칙(WIPO Mediation Rule). URL: <https://www.wipo.int/amc/en/mediation/rules/> (2023년 9월 1일 방문). WIPO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촉진할 목적으로 UN의 전문기관으로서 1967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1994년에 WIPO 내에 WIPO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가 설치되었는데, 동 센터는 사인 간의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IPO,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URL: <https://www.wipo.int/amc/en/center/background.html> (2023년 9월 5일 방문).



에서 증거로 활용되거나 조정 결과를 왜곡하여 외부에 전달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분쟁당사자들이 조정의 이용 자체를 꺼리게 되거나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절차 내에서 적극적으로 공유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조정인과 조정절차 관여자의 비밀유지 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진술의 원용 제한 또는 다른 절차에서의 증거능력 제한, 조정 후 소송절차에서의 조정인의 증거거부권과도 관련된다. 조정절차에서의 비밀유지의 목적은 당사자 보호에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절차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⁷⁾

EU 조정지침 전문(前文)은 조정의 비밀이 유지가 되어야 분쟁당사자들이 조정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으므로 조정인 등의 비밀 유지 의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조정지침은 추후의 민사 및 상사 재판 절차나 중재에서 조정의 비밀유지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민사절차 규정과의 최소한의 양립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⁸⁾ 조정절차에서의 비밀유지는 법으로 보장되어야 조정절차에 대한 당사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조정절차의 비공개, 비밀유지 의무, 진술의 원용 제한, 다른 절차 등에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은 조정의 핵심적 원칙으로 인

7) 김봉철 (2021). 독일 '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기구의 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p.68.

8) EU 조정지침 전문(23).

정된다. 다만, 비밀유지 의무의 주체, 내용, 예외 등에 관해서는 국제적, 국내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 국가의 개별법을 확인하여야 한다.

3.2. 국내법 관련 규정

「민사조정법」을 포함하여 각종 조정제도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는 조정 절차의 비공개, 비밀유지 의무, 진술의 원용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이 모두 있는 경우⁹⁾, 둘 다 규정하지 않거나 비공개나 비밀유지 중 어느 하나만 규정한 경우가 파악된다.¹⁰⁾ 비밀유지 의무위반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제41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 조정법’이라 한다)(제53조), 「콘텐츠산업 진흥법」(제41조)과 같이 별칙 규정이 있는 경우와 언론중재법(제38조), 「주택임대차보호법」(제28조), 「건설산업기본법」(제89조)처럼 비밀유지 규정만 두고 별칙 규정이 없는 경우도 발견된다.¹¹⁾

1)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에 따르면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조정 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¹²⁾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하여,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의견별 조정위원의 수(數)를 누설한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9) 예를 들어 「민사조정법」 제20조(비공개), 제41조(별칙),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6조(비밀유지), 제41조(별칙), 콘텐츠분쟁조정규정 제27조(조정회의 비공개) 제1항, 동 규정 제3항(진술 원용 제한 등).

10) 절차의 비공개만 규정한 경우의 예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발명진흥법」 제49조의2,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한 경우의 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8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7조의2 등. 최계영 (2022). 행정형 조정의 현황과 과제. <인권과 정의>, 제506호, p.110.

11) 최계영 (2022) 앞의 글, p.111.

12) 「민사조정법」 제20조(비공개).

벌금에 처하는데,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¹³⁾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존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¹⁴⁾

2)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 취사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¹⁵⁾ 언론조정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부장은 조정사건 관계자의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중재부장은 법조인(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예비법조인을 포함한다), 대학교수 등 실무연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참석이나 방청을 원하는 사람에게 출석한 당사자(대리인 포함)의 동의를 얻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중재부장은 위의 허가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조정에 참석하거나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이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중재부장의 허가 없이 심리실에서 녹음·녹화·촬영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¹⁶⁾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하여, 언론중재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언론조정중재규칙에서 조정등의 기일에 참석한 중재위원, 조사관 및 기타 사무처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과정, 중재위원의 의견 및 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중재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⁷⁾ 비밀유지 의무가 언론조정중재규칙에만 명시되어 있어 위 누설금지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 규정은 없다.

언론중재법에는 「민사조정법」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와 같은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의 원용 제한 규정은 없다.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¹⁸⁾, 「민사조정법」 제23조가 준용될 수 있는 조정절차에 관한 규정인지는 불분명하다.

13) 「민사조정법」 제41조(벌칙).

14) 「민사조정법」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15) 언론중재법 제19조 제8항.

16)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5조(참석·방청 등).

17) 언론조정중재규칙 제38조(누설금지).

18) 언론중재법 제19조 제9항 및 제10항.

3) 의료분쟁조정법

국내 분쟁 조정제도 중 언론중재법과 유사하게 피해구제제도로서의 분쟁 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¹⁹⁾, 조정부의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부의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²⁰⁾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조정위원, 감정위원, 조사관 및 조정중재원의 임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조정 또는 감정 절차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²¹⁾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²²⁾

의료분쟁조정법도 언론중재법과 마찬가지로 「민사조정법」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와 같은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의 원용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비밀유지 의무와 예외에 관한 참고 기준

4.1. 유럽연합(EU) 조정지침 및 유럽조정인·조정기관 행위규범²³⁾

1) EU 조정지침 및 회원국의 조정법

조정이 비밀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최될 것이 의도된 점에 비추어, 회원국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인뿐만 아니라 조정절차의

19) **의료분쟁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론중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20) 의료분쟁조정법 제32조(조정절차의 비공개).

21) 의료분쟁조정법 제41조(비밀누설의 금지).

22) 의료분쟁조정법 제53조(벌칙).

23) EU는 2008년 5월 21일 EU 조정지침을 채택하여 EU 역내에서 통일된 조정제도에 관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과 조정의 결과인 합의의 집행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동 지침의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04년 조정인을 위한 유럽행위규범(European Code of Conduct for Mediators: 이하 '유럽 조정인 행위규범'이라 함)을 채택하여 2009년 개정된 바 있고, 2018년 12월 4일에는 조정제공기관을 위한 유럽행위규범(European Code of Conduct for Mediation Providers)을 채택하여 조정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행정에 결부된 사람들도 조정절차에서 나온, 또는 조정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정보를 민사 및 상사 재판절차 또는 중재에 제공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²⁴⁾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① 해당 회원국의 공공정책의 최우선적인 고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히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 보호를 보장하거나 사람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보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 요구되는 경우²⁵⁾ ② 조정의 결과인 합의의 이행 또는 집행을 위하여 그 합의의 내용 공개가 필요한 경우²⁶⁾ 비밀유지에 관한 조정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조정의 비밀유지를 위한 보다 엄격한 조치를 법제화할 수 있다.²⁷⁾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조정인과 조정절차에 관련된 사람에게 조정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²⁸⁾, 당사자들에게는 비밀유지에 합의하

24) EU 조정지침 제7(1)조.

25) EU 조정지침 제7(1)(a)조.

26) EU 조정지침 제7(1)(b)조.

27) EU 조정지침 제7(2)조.

28) 독일 「조정법」 제4조는 조정인과 조정절차에 관련한 사람에게 자신의 활동 중 알게 된 모든 내용에 관하여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조정인은 자신의 비밀유지의무의 범위에 관한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비밀유지 규정은 비밀유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서 조정인이 증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당사자에 의해 조정절차에 참여한 감정인, 가족 등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는 처분권의 범위 내에서 합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조정절차에 관여한 제3자까지 확대할 수 있다. 김봉철 (2021) 앞의 글, p.72.

는 계약을 통해서 비밀성을 보장하는 데 비해, 영국과 프랑스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조정에 동의(또는 합의)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에 대해 논의하고, 당사자들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조정인 뿐 아니라 당사자들도 비밀유지를 갖는다.²⁹⁾

2) 유럽 조정인·조정제공기관 행위규범³⁰⁾

유럽 조정인 행위규범(European Code of Conduct for Mediators) 'D. 비밀유지'에 따르면, 조정인은 법률 또는 공익적 필요로 공개될 것이 강제되지 않는 한 조정이 진행되었는지 또는 진행될 예정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조정으로부터 알게 되었거나 조정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인에게 비밀리에 제공된 어떠한 정보도 법으로 강제되거나 당사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유럽 조정제공기관 행위규범(European Code of Conduct for Mediation Providers) '8. 비밀유지'에 따르면, 조정제공기관(mediation provider)³¹⁾은 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관련 법률 및 규칙에서 규정하거나 당사자가 동의한 수준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2018) 및 UNCITRAL 조정규칙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2018) 제10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또는 화해 합의의 이행 또는 집행의 목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

29) 이로리 (2016) 앞의 글, p.250.

30) EU 조정지침의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는 2004년 조정인을 위한 유럽조정인 행위규범(European Code of Conduct for Mediators)을 채택하여, 2009년에 한 차례 개정된 바 있고, 2018년 12월 4일에는 조정제공기관을 위한 유럽 행위규범(European Code of Conduct for Mediation Providers)을 채택하였다. 위 행위규범은 조정센터, 기관 또는 기타 조정 제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민사, 상사, 가족, 행정 및 형사 문제 등 다양한 분쟁 분야에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정기관(기관의 모든 직원과 관련자 포함)이 동 행위규범을 사용할 수 있다.

31) "조정 제공기관"이란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수행하는 조정절차를 관리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법원 관련 조정제도 포함)으로, 조정인이 조정기관의 후원하에 당사자들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외하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UNCITRAL 조정규칙(2021) 제6조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법률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거나 제8조 제4항³²⁾에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화해 합의를 포함하여 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조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UNCITRAL 조정주석(2021)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조정을 개시할 때 조정이 비밀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정도를 고려하고, 비밀유지의무가 명확하게 설명되고, 비밀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관련 법률 및 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동 주석 노트는 비밀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조정인 및 기타 조정과 관련된 사람(예를 들어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보조하는 사람 또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 등), 당사자 사이, 조정 중 당사자들과 조정인 사이, 다른 절차에서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³³⁾

4.3. WIPO 조정규칙

WIPO 조정규칙은 특히 지식재산권, 기술 및 관련 상업적 분쟁을 위해 설계된 것이며, 조정과정에서 공개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비밀유지 규정(제15조~제18조)을 포함하고 있다.³⁴⁾ 조정인과 당사자 간의 회의는 어떠한 종류의 녹음도 할 수 없다(제15조). 조정인, 당사자와 당사자의 대리인, 고문, 독립 전문가 및 당사자와 조정인의 회의에 참석한 기타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조정과 관련된 각 사람은 조정의 기밀을 존중해야 하며, 당사자와 중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과 관련하여 또는 조정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 당사자에게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안 된다. 그러한 각 당사자는 조정에 참여하기 전에 적절한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제16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에 참여한 각 사람은

³²⁾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화해 합의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는 화해 합의가 조정의 결과로 도출된 것이며 동시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구제를 추구하기 위하여 그것이 원용될 수 있다는 증거로서 화해 합의가 이용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 화해 합의가 증거로 이용될 때는 공개가 허용된다.

³³⁾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2021), 〈UNCITRAL Notes on Mediation〉, paras. 45~51.

³⁴⁾ WIPO 조정규칙(2021.7.1).

조정이 종료되면 당사자가 제공한 요약본, 문서 또는 기타 자료의 사본을 보관하지 않고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당사자와 조정인과의 회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작성한 모든 메모는 조정이 종료되면 파기되어야 한다(제17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인과 당사자들은 사법 또는 조정 절차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거로 제출하면 안 된다. (i) 분쟁의 가능한 해결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표명하거나 제안한 모든 견해, (ii)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인정한 모든 사항, (iii) 조정인이 제안한 모든 제안 또는 견해, (iv) 당사자가 조정인 또는 상대방이 제안한 합의안을 수락할 의사를 표시했거나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 (v) 해당 합의의 집행을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또는 법률로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간의 모든 합의(제18조).

5. 결론

민사조정법, 언론중재법을 포함하여 국내 조정 관련 다수의 개별 법률은 '조정'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외국의 조정법이나 조정 관련 조약·모델법·조정 규칙들은 조정을 정의함으로써 조정의 성격·목적·당사자와 조정인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고, 조정절차에 당사자의 자발성·자율성·비밀유지·자기 책임성이 강조된다. 조정의 비공개 원칙과 비밀유지 의무는 조정절차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조정절차에서 언급되거나 생산된 모든 것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후 법원 심리에서 증거로 이용될 수 없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게 하여 당사자들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비밀유지 의무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조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조정 이용을 촉진하며,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U조정지침, UNCITRAL국제상사조정모델법, WIPO조정규칙, 독일의 조정법 등도 위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비밀유지 의무의 주체와 대상 범위, 예외, 비밀유지 의무 위반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① 조정인, 조정기관(EU 조정지침,




조정인·조정기관 행위규범), ② 조정에 참여한 자(UNCITRAL 조정규칙), ③ 조정인, 당사자, 당사자의 대리인과 고문, 독립된 전문가 및 당사자와 조정인의 회의에 참석한 기타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조정에 관련된 각 사람(WIPO 조정규칙) 등 다양하다. 외국에서는 법에 따라 요구되거나 조정 합의에 포함된 당사자 간 비밀유지 합의를 조정인 또는 당사자가 위반하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며, 조정절차와 관련된 증거는 추후 재판 또는 중재절차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 범위는 ① 조정절차에서 발생하거나 절차와 관련하여 나온 정보(EU 조정지침), ② 조정이 진행되었는지 또는 진행될 예정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조정으로부터 알게 되었거나 조정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모든 정보 및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인에게 비밀리에 제공된 어떠한 정보(유럽 조정인 행위규범), ③ 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유럽 조정제공기관 행위규범), ④ 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정보(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 UNCITRAL 조정규칙), ⑤ 조정과 관련하여 또는 조정과정에서 얻은 정보(WIPO조정규칙) 등이 있다.

비밀유지의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로는 ① 당사자의 합의, ② 조정의 결과인 합의의 이행 또는 집행을 위하여 그 합의의 내용 공개가 필요한 경우, ③ 법으로 강제되는 경우, ④ 공익적 필요로 공개될 것이 강제되는 경우, ⑤ 당사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국내의 조정 관련법들은 각 개별법의 목적조항에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을 확인하고, 조정절차의 성격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서 조정은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민사조정법)”,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확립(언론중재법)”,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의료분쟁조정법)”의 수단으로서의 조정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 관한 분명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조정기관이나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 절차로서의 조정을 이해하고, 조정의 원리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당사자 중심의 사적인 분쟁 해결 절차로서의 조정”이 강조되거나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조정절차의 비공개 원칙이 일관성 있게 확립되어 있지 않고, 비밀유지 의무의 주체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민사조정법), “중재위원, 조사관 및 기타 사무처 직원”(언론조정중재규칙), “조정조정위원, 감정위원, 조사관 및 조정중재원의 임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의료분쟁조정법) 등 주로 조정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정작 당사자들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비밀유지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별책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민사조정법, 의료분쟁조정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비밀유지 의무만 두고 별책 조항을 두지 않은 경우(언론조정중재규칙)도 있다.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 범위는 ① 합의/조정과정(민사조정법/언론조정중재규칙), ②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그 의견별 조정위원의 수(민사조정법), ③ 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민사조정법, 언론조정중재규칙, 의료분쟁조정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민사조정법, 언론조정중재규칙)” 또는 “중재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언론조정중재규칙)”로 그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다소 자의적이다.

조정절차의 비공개 원칙과 비밀유지 의무는 조정이 공적 절차로서의 재판과 구별되는 사적 분쟁 해결 절차로서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을 위해서는 당사자 중심의 조정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조정절차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수반되는 조정의 비공개 원칙 보장과 비밀유지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그 내용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으로 맞추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02

언론중재법상 조정 중 제소기간이 경과된 경우의 처리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 문제의 제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권(제14조)과 반론보도청구권(제16조)·추후보도청구권(제17조)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반론보도청구권과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해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아래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만을 보기로 한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를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보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더 용이하다. 반면 정정보도청구권에 기한 권리행사의 제척기간을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언론보도 등이 있는 후 6개월이라는 단기간으로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 처리를 도모한다(제14조 제1항). 이 글에서 사용하는 제척기간은 이와 같은 언론중재법상 단기간 제척기간을 가리킨다. 다만 소제기 제척기간은 제소기간이라고도 쓰기로 한다. 이러한 제척기간은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제14조 제1항),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제18조 제3항), 법원에의 소제기(제26조 제3항)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언론 피해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언론중재법상 조정신청이나 소의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단기간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언론 피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조정신청이나 소의 제기’는 할 수 있으나, 소송에서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먼저 피해자는 제척기간 이내에 언론사에게 직접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고(제14조 제1항),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18조 제3항).

피해자는 이와 같은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척기간 이내에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제3항). 언론사도 제척기간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제3항). 조정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합의간주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

다)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23조). 한편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직권조정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법원에 피해자를 원고로 하고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하는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22조 제3항, 제4항).

피해자는 앞서 본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과 별개로 제척기간 이내에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제3항).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고 본안심리로 나아가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뿐만 아니라 이와 병합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한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언론중재법상 제척기간에 걸리지는 않으므로 각하되지 않고 본안심리를 해야 한다.

2. 제척기간과 관련한 최근 사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언론중재법상 제척기간은 언론중재법상 조정신청과 소의 제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면 언론중재법상 조정신청은 제척기간 이내에 접수되어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그 시점에 언론중재법상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면 조정불성립 후 언론피해자가 제기한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적법한가?

이와 관련하여 최근 두 개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사례 1

서울고등법원 2022. 2. 24. 선고 2020나2000153 판결, 미상고 확정

■ 조정불성립결과와 소제기

언론피해자는 2018. 6. 7. 언론보도가 있음을 알았고, 3개월의 제척기간 이내인 2018. 9. 3.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의 조정신청을 했는데, 그 조정절차가 2018. 10. 24.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되었다. 그 후 언론피해자는 2018. 11. 9. 법원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즉 언론피해자는 언론중재법상 조정신청은 제척기간 이내에 하였으나 언론중재법

상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했다(원고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도 병합하여 제기했다).

■ 언론피해자의 언론중재법상 제소기간에 관한 주장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의 제소기간 제한 규정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등 여타의 절차를 통하여 정정보도 등을 전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언론피해자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불성립결정 이후 법원에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 데에 위 제소기간에 관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바, 원고는 언론중재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조정불성립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지체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중재법상 청구기간을 준수했다.”

■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밝히면서 언론중재법상 제척기간은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이후 법원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는 제소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였다(다만 병합하여 청구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정정보도청구는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았으므로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보도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결국 청구는 기각되었다).

- 이유 ① : 언론중재법상 단기간의 제소기간을 규정한 것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언론보도로 침해된 피해자의 명예 또는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함과 아울러 언론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이유 ② :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소제기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조정불성립결정을 한 경우에 대

해서는 제소기간에 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나 소제기 간주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이유 ③ : 언론중재법상 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사례 2

서울고등법원 2023. 4. 28. 선고 2022나248364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 조정불성립결정과 소제기

언론피해자는 2021. 7. 4. 언론보도가 있음을 알았고, 3개월의 제척기간 이내인 2021. 9. 6.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의 조정신청을 했는데, 그 조정절차가 2021. 10. 6.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되었다. 그 후 언론피해자는 2021. 10. 18. 법원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즉 언론피해자는 언론중재법상 조정신청은 제척기간 이내에 하였으나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했다(원고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도 병합하여 제기했다).

■ 언론피해자의 언론중재법상 제소기간에 관한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이상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제44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

■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사례 1에서 든 이유 중 ②, ③을 들면서 언론중재법상 제척기간은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이후 법원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는 제소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다만 병합하여 청구한 민법상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에 갈음하는 정정보도청구는 제척기간에 걸리

지 않았으므로,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언론보도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라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결국 청구는 기각되었다).

3. 조정신청과 시효중단, 제소기간과의 관계

3.1. 주요 조정 관련 법률에서의 조정신청과 시효중단·제소기간

1) 민사조정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로부터 10년인데,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제35조).

「민사조정법」상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된 경우, 즉 조정이 성공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29조, 제34조 제4항). 조정이 실패한 경우의 시효중단 효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 즉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소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제35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제36조 제1항).

이와 같이 「민사조정법」은 조정이 실패한 경우 소제기 간주 규정을 일반적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신청 역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상 분쟁조정 신청과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제68조의3 제1항 본문). 그러나 당사자가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 단서). 즉 분쟁조정 내용 수락 또는 불수락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분쟁조정신청의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된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사조정법」과 같은 소제기 간주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는 「소비자기본법」상 분쟁조정신청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는 것이고 소제기는 이와 별도로 법원에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당사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한 분쟁조정신청서가 그대로 법원에 접수한 소장이 되지 않는다.

3)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에는 시효중단에 관한 규정은 없고,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라는 단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문제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조정법」이나 「소비자기본법」에서와 같은 시효중단 효력규정은 언론중재법에 없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상 조정신청도 취하·취하간주될 수 있다(제19조 제3항). 또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할 때에는 각하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기각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1조).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이러한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2조 제3항, 제4항).

위에서 든 조정신청의 취하·취하간주, 각하·기각·조정불성립결정의 경우 소제기 간주 규정은 없고,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만

소제기 간주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조정신청은 제척기간 이내에 했다고 해도 위에서 조정신청의 취하·취하간주, 각하·기각·조정불성립결정의 경우 그 시점에서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제소기간 경과로 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된다. 나아가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도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의신청 시점에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소제기 간주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소기간 경과로 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될 것이다.

3.2. 언론중재법상 규정의 검토

1) 문제점

언론중재법의 조정신청과 제소기간, 소제기 간주 규정에 관해서는 다음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청구의 제척기간이 단기간이므로 언론사에 대한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제소기간이 경과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피해자가 언론사에 대한 청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에도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버릴 수 있다면 피해자는 제소기간 준수를 위해 일단 소의 제기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조정과는 상관없는 불필요한 비용지출이나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언론사와의 협이나 조정절차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8조는 언론조정신청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의신청 당시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역시 제소기간은 도과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소제기 간주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만으로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셋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5조는 위와 같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서를 소장으로



보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기록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별도의 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가 관리하는 조정기록을 법원에 송부하는 것이어서 분쟁조정기관의 독자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또 비공개가 원칙인 조정절차에서의 기록을 공개가 원칙인 법원절차에 송부하는 것이어서 조정의 비공개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당사자가 조정은 신청했지만 소는 제기할 의사가 없거나 조정신청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접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간주 조항은 불필요한 소제기를 부추기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이 소제기 간주 규정을 두지 않고 분쟁조정 내용 수락 또는 불수락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분쟁조정신청의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2) 소결론

조정신청에 소멸시효나 제소기간 정지·중단효과를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조정신청을 한 이상 조정절차에서 분쟁당사자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조정 진행 중 소멸시효나 제소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소제기 권

리를 잃어버린다면 분쟁당사자는 조정 진행 중이더라도 비용을 들여 소제기를 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조정신청을 한 경우 소멸시효나 제소기간이 정지·중단되도록 하여 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되, 만일 조정이 실패할 경우 여전히 당사자에게는 소제기권을 보장해주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균형추를 맞춰주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즉 조정에 실패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러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 조정단계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다. 그런데 소멸시효나 제소기간이 중단되지 않아서 조정 중에도 소제기를 하여야 한다면 이러한 균형추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계류 중인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작은 어려움이라도 생기면 어차피 제기되어 있는 소송절차에서 처리하려는 조정에 대한 반대유인(disincentive)이 생기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국제규범으로서 유럽연합(EU) 조정지침(Mediation Directive 2008/52/EC)을 들 수 있다. EU 조정지침 제8조 제1항은 “회원국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을 선택하는 당사자들이 조정 중 제소기간이나 소멸시효(limitation or prescription periods)의 경과로 인해 당해 분쟁에 관한 소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¹⁾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언론중재법의 규정은 타당한가?

첫째, 언론중재법이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도 제소기간이 계속 진행하도록 한 것은 조정과 소송과의 관계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적어도 조정신청이 있을 때 제소기간

1)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Article 8 Effect of mediation on limitation and prescription periods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parties who choose mediation in an attempt to settle a dispute are not subsequently prevented from initiating judicial proceedings or arbitration in relation to that dispute by the expiry of limitation or prescription periods during the mediation process.



은 정지하도록 하고,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제기를 한 경우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언론중재법이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기록까지 법원에 송부하도록 한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독자적 분쟁조정기관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더구나 최근 다양한 법원 외 분쟁조정기관의 기능이 중요시되고 각 분쟁조정기관의 독자적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논의되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기본법의 시각에서 보면 조정이 실패한 경우 그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제기를 하면 언론중재법상 제소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는 것이 전체적 체계에 부합한다.

4. 언론중재법상 조정 중 제소기간이 경과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4.1. 현행법상 실무적 대처


언론중재법상 조정신청과 소제기는 모두 같은 단기간의 제척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조정신청에 제소기간 중단효과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진행되는 조정 중에 제척기간이 경과할 경우 더 이상 소제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앞에서 본 두 개의 최근 사례는 모두 조정신청은 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졌으나 조정 불성립결정시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소

는 부적법하게 된 상황이다.

현행법상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서 조정 중이라도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소제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일반적인 안내와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언론보도를 알게 된 제척기간 기산일에 따른 제소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고지하고 조정신청인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조정신청인과 언론사로서도 제소기간을 고려하여 조정에 더욱 집중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로서도 제소기간을 고려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된다.

4.2. 입법 개선점

언론조정신청 후 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언론조정법 법원 외 분쟁조정으로서의 독자적 성격, 간주되는 당사자 의사와 전체적 ADR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의 소제기 간주 규정 보다는 조정신청이 제척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 조정실패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소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간명하다. 조정실패는 취하 또는 취하간주된 경우, 각하·기각·조정불성립결정이 있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03

추후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 고찰

이예찬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 차장,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1. 들어가며

한국 언론의 범죄보도 관행에 대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비판이 있다. 대부분의 보도가 수사단계를 다루는 것에 치중하고 혐의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는 등한시한다는 것이다.¹⁾ 수사기관발 정보에 크게 의존하다보니 유죄를 속단하는 보도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범죄사건에 대한 속도감 있는 보도는 피의자에 대한 공분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런데 후일 피의자가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실이 보도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당연히 최초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피의자의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그에게 유리하게 종결된 형사사건의 결과가 보도될 필요성이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는 범죄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구제를 위한 특별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바로 추후보도청구권이다.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 그 사실에 관한 보도의 게재를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87년에 제정·시행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한다) 및 「방송법」을 근거로 처음 도입되었다. 이는 1982년에 시행된 오스트리아 「언론매체법」(Mediengesetz) 제10조의 형사절차의 경과에 관한 추후보도(nachträgliche Mitteilung)에 관한 내용을 계수한 것으로 평가된다.²⁾

추후보도청구권은 도입 이래 범죄보도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수단으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조정사건 수의 약 3.5%를 차지한다.³⁾ 본고에서는 이러한 추후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행사요건을 살펴봄으로써 청구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실무에서 대두된 쟁점을 검토하며 개선과제를 논의할 것이다.

1) 노성호·이기웅 (1996). <한국언론의 범죄보도관행> (연구총서 96-08).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60-61.

2) 박용상 (1987). 새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1987년 겨울호(통권 25호), p.67.

3) 언론중재위원회 (2023). <2022 언론중재위원회 연간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p.20.

2. 추후보도 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행사요건

1) 추후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제14조), 반론보도청구권(제16조), 추후보도청구권(제17조)은 모두 언론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반론권 수단이다. 이들을 비교하면, 먼저 정정보도는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16호). 보도내용의 허위성을 기본요건으로 하며 그 증명책임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가 부담한다.⁴⁾ 실무적으로 어떤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확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실 인정 문제는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반면 추후보도청구 사건에서는 보도내용의 허위성 여부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보도에 적시된 범죄혐의 또는 형사상 조치가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된 사실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이다.⁵⁾ 헌법재판소도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이미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되어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⁶⁾ 정정보도청구권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보도에 대해서는 행사하기 어렵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실무상으로는 수사 중인 사건을 다룬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가 청구된 경우 일단 반론보도를 게재하되 이후 수사결과를 추후보도 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⁷⁾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 개념보다는 형사절차가 종결된 시점에서 보도내용을 업데이트한다는 측면으로 추후보도의 기능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이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17호). 정정보도와 달리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도 존재하나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⁸⁾ 표현양식 또한 “(피해자는) ~라고 알

4)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5) 언론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 등 종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30조).

6)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결정.

7) 2021서울조정1236·1237·1238/1239·1240·1241. 이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례의 주요내용은 당해 연도 언론조정 중재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대법원 2009. 1. 15.자 2008그193 결정.

려(또는 밝혀)왔습니다”라고 기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무죄판결 등 사실에 관한 주장이 담기더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이 그 진위 여부를 의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명백히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추후보도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발급한 공문서로 확인된 무죄판결 등 사실을 언론사가 밝히는 것이므로 높은 신뢰성이 담보된다. 따라서 추후보도청구권 조항을 폐지하고 이를 반론보도청구권으로 포섭하자는 견해⁹⁾는 반론보도청구권과 확연히 구별되는 추후보도청구권의 의의를 다소 간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추후보도청구권은 제척기간에서도 다른 청구권과 차이가 있다.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은 문제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는 후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와 달리 추후보도는 범죄 혐의 또는 형사상 조치에 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형사절차의 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특히 재판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보도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흔하다. 추후보도청구권에 대해서는 그러한 여건을 고려해 제척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추후보도청구권은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만으로는 불충분한 피해구제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언론중재법 제17조 제4항). 따라서 피해자는 각 청구권의 제척기간 내에 있다면 다양한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오스트리아 「언론매체법」에서는 “추후보도는 그 내용이 요구된 권리보호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제10조 제2항)”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후보도청구권의 국내 도입 당시 정간물법에서도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고 정하였다. 그런데 관련 조문이 2005년 시행된 언론중재법으로 흡수되며 “추후보도에 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7조 제2항)라고 법문에 변동이 발생하였다. 개정된 문구가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더욱 강조하는 느낌을 준다. 추후보도가 무죄판결 등 사실을 단순 보도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

9) 윤진희 (2019).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18권 3호, pp.130-131.

어야 한다는 취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추후보도청구권은 오스트리아에 연원을 두고 있으나 독일에서도 민법 제 823조 및 제1004조에 따라 도출되는 범죄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¹⁰⁾ 연방헌법재판소(BVerfG)는, 추후보도는 형사범죄에 대한 합법적 보도 이후 법원 판결 또는 검찰청의 결정으로 다른 관점에서 결론이 나고, 보도로 인한 개인의 권리침해가 지속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범죄혐의에 관한 보도는 항상 부정확할 위험이 있고,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자신에게 유리한 형사절차 결과에 대한 추후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개인 권리 사이에 필요한 균형을 이룬다면 합헌이라고 선언하였다. 다만 위 결정에서는 추후보도는 원래부터 위법한 보도를 정정(Richtigstellung)하는 것과는 요건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언론사에게 최초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의 입장(“오늘날의 시점에서 당사는 기존 보도내용을 유지하지 않습니다”)을 보도하도록 강제한 고등지방법원의 판결이 「기본법」(Grundgesetz) 제5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추후보도의 내용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언론사에게 보도내용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정정보도에 준하는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청구권의 한계를 밝힌 것이 판례의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유사하게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일 뿐이지,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며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권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추후보도의 내용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로 종결된 사실”이 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추후보도문 중 “이로써 법원을 통하여 A 상사가 E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라는 부분은 배제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¹¹⁾

물론 기존 보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암시하거나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했다거나, 실제 없었던 수사기관

10) BVerfG, Beschluss vom 22.06.2017 – 1 BvR 666/17.

11) 서울고등법원 2019. 7. 12. 선고 2019나2019090 판결.



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된 경우에는 추후보도의 내용에 더해 정정보도 성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하급심 판례 중에는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허위사실이 보도된 경우 추후보도에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정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례가 있다.¹²⁾

본고에서는 한국의 추후보도청구권의 근거법으로 언론중재법을 소개했으나 재판실무상으로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추후보도를 구하는 청구도 인정되고 있다.¹³⁾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권은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제17조 제3항),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민법」 제764조에 따른 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보도가 위법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것이 요구된다.¹⁴⁾ 따라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공익성 + 진실성 or 진실상당성)¹⁵⁾가 인정될 경우 청구가 기각되는 구조에 놓인다.¹⁶⁾

¹²⁾ 광주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가합10162 판결(제1심); 광주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1나292 판결(제2심).

¹³⁾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가합70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가합10162 판결(제1심); 광주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1나292 판결(제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111367 판결.

¹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111367 판결.

¹⁵⁾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¹⁶⁾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8가합36359 판결.

2) 추후보도청구권의 성립 및 행사요건¹⁷⁾

추후보도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범죄혐의란 형법 및 기타 특별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상 조치란 수사기관의 입건, 내사, 영장 청구 및 발부, 피의자 소환, 피고소, 피고발 등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조치를 의미한다.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임을 요건으로 한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추후보도청구권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지만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되었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암시된 것이 된다. 이로 인해 당사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면 사실의 적시가 인정될 여지가 클 것이다.¹⁸⁾ 또한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경우 그러한 조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보도는 당연히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급심 판례 중 추후보도청구의 요건으로 사실의 적시를 제시하며 이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우가 확인된다.¹⁹⁾

위 사건 피고들은 원고가 자신이 근무하던 협회의 규정을 어기고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강압적 지시를 하여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후 원고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재판부는 해당 증명서의 허위성 판단에 대한 확립된 기준이나 규범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어떤 행위에 대한 형사범죄 성립 여부와 언론이 행하는 비판 보도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며 허위 증명서라는 표현을 의견표명 내지 평가로 보아 「민법」 제764조에 의한 추후보도청구를 기각하였다. 일반적으로 추후보도청구 사건에서는 근거법에 관계없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사실의

17) 추후보도청구권의 요건을 핵심만 추린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박용상 (2008). <명예훼손법>. 서울: 현암사. pp.1173-1177. 참고.

18)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7가합111367 판결.

적시 여부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원고가 특정 범죄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기사에 기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현을 문제 삼아 구체적 사실적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가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추후보도청구 사건에서 사실의 적시 여부를 이처럼 엄격하게 따진다면 피해구제가 상당히 요원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범죄혐의나 형사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보도될 경우 이를 접한 사람들은 당사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추후보도는 이러한 인식을 형사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나마 교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예회복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추후보도청구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후보도를 청구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종결이란 판결의 경우 그것이 확정된 경우를 뜻한다. 검경의 처분에 대해서는 실무상 처분이 있는 시점으로 보면 될 것이다. 하급심 판례들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라 함은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 아닌 사실임이 법원의 무죄판결, 검사의 무혐의처분 등으로 밝혀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²⁰⁾ 이와 별개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는 추후보도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전술한 판시에서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다는 표현은 사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추후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도된 범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등을 받은 사실만 있으면 족하고, 보도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이 앞선 법리를 내세워 특이한 판단을 한 사례가 있다. 해당 사건 원고는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상소심이 계속 중인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후 원고는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결과를 다룬 기사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²¹⁾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심이 진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0가합11760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가합353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가합130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가합128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56484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373, 2016가합380(병합) 판결.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가합130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가합1282 판결.



행 중인 사실을 보도한 것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무혐의처분에 대해 고소인의 항고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된 데 대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에 따른 추후보도가 이루어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례도 있다.²²⁾

추후보도청구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 일부에 대해 무죄판결이나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가능하다. 동일한 죄목이라도 가분적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면 일부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보도를 구할 수 있다. 일례로 수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횡령액으로 약 140만원만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경우, 무혐의처분을 받은 액수에 관한 청구가 인용된 바 있다.²³⁾

한편 형사절차 종결의 의미와 관련해, 검경의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불복절차 계속 중에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청구요건을 결여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급심 판결에 대해 상소기간 중에 있거나 상소심 계속 중에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내사가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에 추후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혼선

22) 2019서울조정1507.

23)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373, 2016가합380(병합) 판결.

이 있는 것 같다.²⁴⁾ 그러나 수사기관의 내사종결처리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확설이 있고,²⁵⁾ 하급심 판례 중에도 경찰의 내사종결처리를 근거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²⁶⁾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례 중에도 검찰의 진정내사 사건에 대한 각하처분(증거불충분 등), 경찰의 내사종결(무혐의)을 근거로 청구를 인정한 경우가 확인된다.²⁷⁾ 다만 경찰의 내사중지 처리가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수사불능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다.²⁸⁾

세 번째 요건은 청구권의 주체에 관한 것이다.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당사자에 해당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그러한 당사자적격 여부를 반론보도청구권에서 요구되는 개별적 연관성보다는 다소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²⁹⁾ 일반 독자가 당사자가 누구임을 알 수 있도록 특정 가능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급심 판례를 보면 추후보도청구권의 존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개별적 연관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³⁰⁾의 취지 등을 그대로 따르는 양상을 보인다.³¹⁾ 즉,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요건은 청구에 대한 거부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거부사유가 준용되므로(언론중재법 제17조 제3항), 추후보도청구가 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에는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실제로, 청구된 추후보도의 핵심 내용(무죄판결 또는 무혐의처분 경위와 이유 등)이 원보도를 한 언론사를 통해 후속보도 된 경우 추후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³²⁾

24) 2021서울조정316, 2021서울조정317(병합).

25) 박용상 (2008), <명예훼손법>. 서울: 현암사. p.117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3가합34520 판결(제1심); 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5나2039805 판결(제2심)

27) 2015경기조정58, 59; 2014경남조정5~8; 2009부산조정11; 2008충북조정1.

28) 2008부산조정11.

29) 박용상 (2008) 앞의 책. p.1176.

30)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가합2095, 2020가합2101(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가합2088 판결

3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가합35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가합61499 판결.

이상으로 추후보도청구권의 성립을 위한 주요 요건을 살펴보았다. 중요한 점은 제척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무죄판결 등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 여기서 종결 사실을 안 날이란 자신에 대한 범죄혐의가 무죄판결 또는 무혐의 처분 등으로 종결되었음을 인지한 날이 된다. 언론중재법상 제척기간을 초과했다면 「민법」 제764조에 기한 추후보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

3. 추후보도 청구권에 관한 최근 이슈 및 입법적 개선과제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두 가지 현안이 논의되고 있다. 첫 번째는 2021년 검경 수사관 조정으로 도입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및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각하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완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 제1항). 이와 별개로 고소인 등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이에 따른 재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불송치 결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무죄판결 내지 무혐의처분과 동등한 수준의 종결 사실로 보아 추후보도를 허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나 실무기관에서도 논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례를 보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 기한이 지났을 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³³⁾와 불송치 결정을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의제하여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³⁴⁾가 혼재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상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당시에 실무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었다.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33) 2022서울조정1750·1751.

34) 2022강원조정1/2; 2021서울조정2931; 2021서울조정1226·1227·1228.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 또는 10일 이내에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이 가능했다(「검찰청법」 제10조 및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처럼 검사의 불기소처분 역시 불복절차를 거쳐 번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실무에서는 피신청인 측이 항고 등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추후보도의 게재를 권유해 왔다. 만약 증명이 된 경우라면 각하결정을 내리기보다 불복사건이 기각되어 불기소처분이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추후보도를 게재하도록 했다.³⁵⁾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렸는데 항고기각 결정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추후보도를 다시 청구해 조정이 성립한 사례도 있다.³⁶⁾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검찰수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³⁷⁾

추후보도청구 요건과의 관계에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크게 문제되는 이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달리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추후보도청구 요건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의 피해구제가 무기한 지체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제1조에서 언론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언론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제가 필요함을 고려하면 불송치 결정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후보도청구권을 즉시 부여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추후보도가 게재된 이후 이의신청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2021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률은 6.4%, 이의신청 사건 기소율은 2.11%에 불과하다(검사의 재수사 요청률은 3.72%, 재수사 요청 사건 기소율은 5.84%).³⁸⁾ 위와 같이 매우 낮은 가능성을 염려하여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가 하염없이 지연되는 것은 부당할 것이다. 낮은 확률이지만 불송치 결정에 따른 추후보도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언론사의 판단에 따라 그러한 사실을 후속보도하면 될 것이다.

이상으로 불송치 결정 관련 쟁점에 관한 논의를 마치고 두 번째 쟁점인

35) 2020서울조정284·285/286·287.

36) 2022서울조정1804.

37) 2022경기조정90/91; 2021서울조정1172·1173·1174·1175.

38) 대검찰청 (2022. 2. 4.).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업무 분석 보도자료.



행정처분보도 피해자에 대한 추후보도청구권 부여 필요성으로 넘어가겠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논문으로 한차례 논의를 전개한 바 있고,³⁹⁾ 이후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된 바 있다.⁴⁰⁾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 <표>와 같다. 즉 범죄보도의 피해자가 해당 범죄 혐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표 1> 추후보도청구권 관련 언론중재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 또는 비위혐의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거나,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p> <p>-----</p> <p>-----</p> <p>-----</p>

39) 이예찬·이재진 (2020). 형사절차를 전제로 한 현행 추후보도청구 요건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사각지대 논의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2권 3호, pp.263-290.

4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7조 제1항.

현행 규정상으로는 아무리 중한 범죄혐의가 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형사절차가 개시된 바 없다면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례를 살펴보겠다.

먼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되어 식약처로부터 제품 회수명령을 받은 사실이 보도된 식품업체의 경우이다. 해당 업체는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명령 취소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추후보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형사절차가 개시된 바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⁴¹⁾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사실을 밝힌 보도는 범죄혐의에 관한 보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절차가 진행된 바 없어 추후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못했다.

두 번째 사례는 공직윤리법 위반 등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시 의회에서 제명되었다고 보도된 기초의회 의원이 신청한 사건이다. 그는 대법원에서 제명의결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자 추후보도를 청구하였는데 중재부는 신청인이 행정소송의 당사자 지위를 갖고 있을 뿐,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결정을 내렸다.⁴²⁾

두 사건 모두 보도대상에 대한 심대한 명예훼손이 초래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추후보도를 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특이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 신청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와 태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조사 및 부검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서는 사망원인이 현대의학으로 예방 및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위 부검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추후보도를 청구하였다. 이처럼 추후보도의 내용이 형사절차의 종결사실을 다룬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정은 성립되었다.⁴³⁾

41) 2019서울조정1704, 2019서울조정1705, 2019서울조정1706, 2019서울조정1707, 2019서울조정1708(병합).

42) 2017서울조정678·679.

43) 2010제주조정13·14.

불송치 결정 관련 추후보도청구권 인정 여부가 중재부 재량에 달린 문제인 데 반해, 형사절차가 수반되지 않은 범죄보도 피해자에게 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2021년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었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둘러싼 논쟁으로 인해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무산된 아쉬움이 있다. 기존에 추후보도청구권을 인정하던 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행정처분보도 피해자에게도 범죄혐의에 관한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등 형태로 종결된 경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⁴⁴⁾

4. 나가며


2022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추후보도청구사건의 피해구제율은 88.9%로 다른 청구유형의 사건(정정 66.3%, 반론 70.1%, 손해 66.2%)보다 월등히 높았다.⁴⁵⁾ 언론사들이 추후보도청구권을 범죄보도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피해회복에 적극 동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추후보도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 달리 무죄판결 등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는 언론사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한 몫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추후보도청구권에 대한 별다른 쟁점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 해결이 관행적으로 되어 온 측면도 있어 보인다. 청구권에 관한 법 이론적 검토나 실무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건을 둘러싼 논쟁거리가 많아야 할 것이지만 추후보도청구사건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추후보도청구권과 관련해 최근 떠오른 이슈들은 기존의 안정된 실무상황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외부요인과 기존 청구권으로는 피해구제가 어려운 사건유형의 등장으로 도전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론중재법 자체는 2009년 개정(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 조정대상 매

44) 언론중재위원회는 본 장에서 다룬 추후보도청구권 행사 요건에 관한 법리 해석과 실무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후보도청구 요건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활동기간: 2023. 6. 19. ~ 7. 31.). 보고 작성 이후 확정된 소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① 불송치결정 후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재수사요청 기한)을 지난 때 또는 검사가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 없이 불송치기록을 반환한 경우 해당 일을 형사절차의 종결시점으로 보고, ② 형사처벌과 연결된 행정처분보도 관련 사건의 경우 현행법상 추후보도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예비심리(본안전심리)를 통해 청구를 배척하기보다는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참여의사 등을 확인하여 본안심리를 개최함으로써 적절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등의 내용이 실무처리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45) 언론중재위원회 (2023). <2022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p.18.



체에 포함됨) 이래 큰 변경이 없었으나 타 법 개정 및 다양화된 사건양상이 실무상 고민거리를 안겨준 것이다. 대부분의 추후보도청구사건이 언론분쟁조정절차에서 해결되는 만큼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과 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재판실무에서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 근본적으로는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입법적 개선과제를 포함하여 언론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실현되기를 바란다. 법은 정체되지 않고 그 목적에 충실하도록 현실과 부딪히며 변화해 나갈 때 그 존재이유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고소” 기사로만 말하지 않는 기자들

기자에 분노하는 사회...최후수단으로 '소송' 택하는 기자들
소송으로 사라지는 공론장...‘비판 수인’ 언론인 지위 강조하는 판결도

김도연 미디어오늘 기자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기자 초년병 시절 선배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다. 수습기자 때는 ‘좋은 기사를 ‘잘’ 쓰라는 의미로만 생각했다. 쓰는 문장마다 비문투성이에 팩트마저 헛거운 기사 때문에 데스크에 얼얼하게 혼쫓이 나다 보면 ‘기사로 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로 깨닫게 된다.

기사를 다루는 손이 제법 자유로워지고, 무엇이 사실이고 주장인지 구분하게 되어 내 기사를 쓰는 수준이 되면, 이 문장 의미는 또 다르게 다가온다. 기자 경력 10년이 넘은 지금 내게 ‘기사로 말한다’는 말은 ‘타인을 겨냥한 펜을 쥐었으니 기사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감수하라’와 같다. 매일매일 내게는 누군가를 비판할 지면이 주어진다. 데스크는 목에 핏대를 세우고 ‘조지는 기사’ 마감을 주문한다. 지면 하단에 비판 대상 입장, 즉 반론을 덧붙이곤 하지만 기사라는 것은 실명이 거론되는 누군가의 명예를 필히 훼손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흥기다. 기자나 기사에 대한 독자와 비평가들의 비판은 그저 감수해야 할 것이었다. 기자가 소송을 한다? 아이고,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는 말의 의미

그래서 2022년 9월 기자 22명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하 ‘서울민예총’이라 한다)과 박찬우 작가를 상대로 위자료 2억 2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

송을 제기했을 때, 개인적으로 고개를 가웃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면으로 작품의 후진성과 정파성을 비판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을까.

서울민예총은 2022년 6월 ‘굿, 바이 시즌2展 : 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전시를 개최했다. 서울민예총 시각예술위원회 박찬우 작가는 100명 이상의 전·현직 언론인을 회화화한 실명 캐리커처를 출품했다.

캐리커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 강용석, 김세의, 김용호씨나 ‘조국 흑서’ 저자 서민 교수 등 보수진영 인사도 적지 않지만, 상당수는 현직 언론인이었다. 언론인 면면을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검증 보도했던 주요 방송·신문사 법조 기자들이나 문재인 정부에 비판 보도를 한 기자들이 대다수다. 그러다 보니 박 작가 작품에 ‘언론인을 풍자 도마 위에 올리는 기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진보 인사에 비판적인지 여부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한국기자협회가 법률 지원을 맡은 이 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기자들은 작품과 전시가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민예총과 박 작가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당시 ‘굿, 바이 전’ 작가들은 “작가 작품에 불만이 있고, 불편하고, 곁끄러우면 그렇게 표현하면 된다”며 기자들 대응을 비판했다. 반이정 미술평론가는 “민주당 진영을 선한 자로, 민주당에 반대하는 진영을 악한 자로 양분하는 예술은 풍자가 생략된 일방적 선전물”이라며 “그래도 이런 수준의 작품과 전시가 열리는 걸 막을 순 없거니와 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류 예술이 ‘정의감이 충만한 후진 예술인’ 점을 이해하고 동조하지 않으면 된다”¹⁾고 말한 바 있다.

혹자는 반문할지 모르겠다. 기자는 소송하면 안 되는가? 물론, 언론인의 고소·고발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소수지만 일부 언론인은 소송전을 불사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언론소송을 제기한 언론인은 5명. 이는 정치인(21명)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과 2021년에도 각각 5명의 언론인이 언론소송에 나섰다. 아무리 언론인이 펜과 지면을 쥐고 있대도 소송이 아니면 피해 구제가 어려운 사건도 존재한다.

언론인이 제기한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언론소송 사건을 소개한다. 아래 사례들을 보면, 아무리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공인 신분인 기자여도 소송이 아니면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언론인들이 최후 수단인 ‘소송’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법원은 기자에 대한 비판을 넓게 인정하고 언론인이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에 해명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1) 김도연 (2022. 6. 7). ‘기자 조롱’ 캐리커처에 기협·언론사 소송 예고. <미디어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356>

CASE 1 : ‘소송’ 반격 나선 前 <채널A> 기자

먼저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과 유착해 취재원을 협박하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진보 정치권 인사들의 비위 제보를 강요했다는 혐의(강요미수)를 샀다가 올해 초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이야기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까지 됐던 그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보 진영 인플루언서 김어준씨, 유시민 전 이사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최 의원 페이스북 글이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취재원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고 발언했다고 썼다. 그러나 이 내용은 허위사실이었다. 이 전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쓴 것이다. 이 전 기자는 이듬해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으니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1·2심 모두 최 의원에게 300만 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6월 2심 재판부(서울고법 민사13부)는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취재원에게 보낸) 편지와 발언 요지를 왜곡해 기자가 검사와 공모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재판은 무죄를 선고하며 최 의원 손을 들어줬다. 최 의원이 이 전 기자 명예를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드러냈지만, 이 전 기사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최 의원 글이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의 한계, 언론과 검찰의 관계, 선거의 공정한 진행 등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이동재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 활동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피고인(최강욱)이 앞서 본 것처럼 허위사실을 드러냈다고 해도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자초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최 의원 게시글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으로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위법한 취재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비판과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기자의 취재 활동에 견제와 비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1심 무죄 선고 후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해 2023년 9월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기자가 취재원으로부터 취재 정보를 얻기 위해 겁을 주거나 압박하는 ‘비윤리적 취재’에서 비롯한 것은 사실이지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으로 비화하면서 결국 기자가 구속되는 파국을 피하지 못했다. 이 기자는 2023년 6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나를 인격 살인했던 최강욱·유시민·김어준·황희석·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에게 소송은 최후의 수단 아닐까?

CASE 2 : 허위사실 유포에 재갈을 물리려면…

소송은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승소 시 효과가 크다. 유투버들의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허위사실 유포 틀어막기’는 언론인들이 소송을 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한 전(前) <TV조선> 사회부장 이진동 기사는 2023년 8월 18일 <월간조선> 출신 유투버 우종창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우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 기사의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우씨는 2018년 3월부터 반복적으로 이 기사가 윤석열 검사(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검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를 주도한 <한겨레>와 <TV조선>의 배후라는 주장이다. 이 기사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씨와 이를 여과 없이 방송한 유투버들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2월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판사는 우씨가 이 기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우종창)가 적시한 허위사실, 즉 원고(이진동)가 윤석열 검사의 조언과 지시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을 왜곡 보도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언론인으로서의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으로 “이진동이 기자라는 사실은 알지만 개인적 친분은 없다. 2016년 6월 무렵 이진동과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거나 이 사건 CCTV 영상(최순실 의상실 영상)에 관해 이진동에게 법적 조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우씨는 이 기사가 최순실 보도 당시 법적 조언을 받은 인물로 자기 책에 언급한 익명의 검찰 간부를 윤석열이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강 판사는 “익명의 검찰 간부는 윤석열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우종창)가 이 사건 방송 등에서 원고가 윤석열 주도과 지시로 국정농단 사건을 취재·보도했다며 적시한 사실은 모두 허위”라고 했다.

법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서일까. ‘최순실 게이트 보도 배후에 윤석열 검사가 있다’는 주장은 온라인에서 자취를 감췄다.

CASE 3 : 아무리 공적 존재여도 사생활 영역은...

종합일간지 출신으로 현재는 인터넷 언론사 대표인 A씨. 그는 <조선일보>, <펜앤드마이크>, <뉴데일리>와 그 소속 기자 5명을 상대로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22년 9월 일부 승소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재판은 1심 판결로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유세 차량에 올랐던 20대를 겨냥해 SNS에다가 “애네들 얼굴 잘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보러오면 반드시 떨어뜨리세요. 건실한 회사도 망하게 할 애들입니다. 국민의힘 지지해 문제가 아니라 바보라서 문제”라고 거칠게 힐난했다.

<조선일보>, <펜앤드마이크>, <뉴데일리> 기자들은 논란을 부른 A씨의 SNS 발언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A씨의 전과(前科) 사실을 적시했다. A씨는 실제 관련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물이다. A씨는 이들 언론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범죄 전과는 보도할 가치가 있었을까. A씨 전과는 이미 범행 당시 언론 보도로 알려진 사실이거나 A씨 스스로 전과 사실을 대중에 알린 적도 있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보도할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피소된 언론사들이 기사 일부를 삭제하고 기사 1건당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회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일부 언론을 통해 원고(A씨)의 전과 사실이 보도됐거나 원고 스스로 전과를 공개했다고 해도 피고들이 원고의 전과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펜앤드마이크>, <뉴데일리> 측은 A씨 전과는 이미 대중들이 익히 알고 있는 공개 정보라는 점, A씨 스스로 공공연하게 전과 사실을 밝힌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A씨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사들 측은 “공적 존재인 원고(A씨)가 게재한 게시물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독자가 원고 발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뒤야 할 것인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원고 전과를 언급한 것”이라며 “공공 이익을 위한 보도이기 때문에 삭제 대상이 될 수 없고, 불법행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전과는 (원고의) 게시물이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원고가 기자로서 공적 존재라고 해도 원고의 전과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공적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 가운데 전과가 적시된 부분이 A씨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삭제를 명했다. “삭제할 부분은 이 사건 보도의 전체 문맥이나 의

미 구조상 필수적이라거나 나머지 기사 내용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기사도 보장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다고 법원은 본 것이다.

CASE 4 : “언론인에 일반인 잣대 적용할 수 없다”

현직 언론인은 아니지만 기자 출신 김장겸 전 <MBC> 사장 언론소송도 특기할 사건이다. 법원이 ‘공인으로서 언론인은 합리적 의혹과 비판을 수인할 책무가 있음’을 시사해서다. 비판을 어느 정도 허용하되, 의혹 제기는 해명과 반박으로 극복해야 할 지위라는 것이다.

김 전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MBC> 인사 5명은 2021년 12월 노보를 통해 자신들을 비판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노보에 이들을 “편파 왜곡 보도를 주도한 간부”라고 비판하거나 “공영방송 MBC 파괴 주범” 등 표현으로 비난했다. 1심 법원은 2023년 5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론노조 MBC본부 손을 들었다. 김 전 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4명은 항소했다.

문제가 된 2021년 9월 27일자 언론노조 MBC본부의 특별판 노보는 김 전 사장에 대해 “김장겸을 비롯한 MBC 내 부역자들은 정권의 방송 장악에 협력해 MBC를 정권에 헌납했고 그 대가로 승승장구했다”, “김재철 사장 시절 정치부장으로 왜곡·편파 보도에 앞장섰던 그는 권력 입맛에 맞는 MBC 보도를 만든 대가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사장은 방송 공정성·공익성 훼손 등 이유로 2017년 11월 해임됐다. 특별판 노보는 2017년 ‘김장겸 사장 체제’에서 해직 언론인 출신 ‘최승호·박성제 사장 체제’로 교체된 <MBC>가 개혁 일환으로 진행한 지난 4년의 방송 정상화 과정과 인적 청산 작업을 되살펴 보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MBC>의 방송 공정성 후퇴 사례를 기록하기 위해 발간됐다.

김 전 사장 등은 노보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이고, 노조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 독자로서는 그 자체로써 원고들에 관한 어떤 명예훼손적 사실의 전달이라기보다 피고들(언론노조 MBC본부)의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과거 행적에 관해 피고들 관점에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판결문에서 인상적인 대목은 언론인에 대한 비판 잣대를 언급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언론인은 공인으로서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모두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로서 공인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에게 통상의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그 재직 기간 동안 자신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의혹이 있으면 어느 정도 문제 제기나 일정 범위 비판 등은 허용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간행물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격권 침해 등 부분이 피고들의 감시, 비판, 견제라는 언론 활동 범위를 벗어나 원고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 의견 표명으로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CASE 5 : 언론인, 언론사, 언론 대표자 잣대는 다르다?

이번에는 결정문을 살펴보자. 2017년 8월 개봉한 ‘공범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KBS·MBC 보도 공정성이 어떻게 후퇴했는지 담아낸 영화다. 정권의 방송 장악에 가담하거나 저항한 언론인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비판 대상이 된 <MBC>와 전·현직 임원들은 개봉 직전 “우리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원에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영화 상영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 논리가 주목할 만하다. 서울중앙지법 제 50민사부는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갖고 있어서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서는 안 된다”는 2006년 대법원 판례(2003다52142 판결)를 인용한 뒤 다음과 같이 결정문에 적시했다.

“표현의 대상이 언론사가 아닌 언론사 소속 언론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언론사와 동일한 수준의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당 언론인이 언론사 대표자나 주요 임원 직책을 맡고 있고 언론사 인사, 경영 방향, 정책 판단을 결정할 수 있고 언론사의 특정 쟁점에 대한 보도 여부에 대해서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라면, 해당 언론인은 자신들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도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언론사를 통해 직·간접적 반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그와 같은 언론인에 대한 감시와 비판 역시 폭넓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표현의 당부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준하여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원 논리를 요약해 보면, ① 언론사와 소속 언론인에 대한 명예권 침해 판단 기준은 다르

다. 언론인 개인보다 언론사의 명예권 침해 여부를 더 엄격하게 본다. ② 하지만 보도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언론사 대표나 주요 임원의 경우엔 명예권 침해 여부를 언론사에 준할 정도로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가처분을 신청한 <MBC> 전·현직 임원들이 “비판과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그런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사로만 말하기 어려운 시대, 그러나

정리해보면, 앞서 본 사건들은 기자들이 소송을 택하는 여러 이유를 설명하고 일부 판결은 언론인이 공인으로서 일정 부분 합리적 의혹과 비판을 수인할 지위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인이 제기하는 언론소송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짚고자 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언론인에 대한 반지성적 증오다. 2021년 ‘마이기레기닷컴’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논란을 부른 적 있다. 자경단을 자처하는 이 커뮤니티는 기자들에 대한 ‘A급 제보’(각종 비리, 불법, 탈법, 학교폭력)에 30만 원, ‘B급 제보’(경범죄, 방역 수칙 위반)에 20만 원, ‘C급 제보’(현재 사진, 과거 정보, 잡다한 제반 정보)에 10만 원을 걸었다. 이들의 뒷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기자들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이들이다. 리스트에 오른 기자들의 소속 매체가 틀린 경우도 적지 않았고, 기자의 각종 신상 정보가 동의 없이 게재되는 것도 문제였다. 심지어 가족과 함께 촬영한 사진도 커뮤니티에 업로드되어 조리돌림 대상이 됐다. 기자 개인 SNS나 온라인에서 확보한 정보가 이들 자경단 운영의 바탕이 됐다. 당시에도 기자협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안타깝게도 뉴스 소비자들은 과거처럼 기사를 기사로만 평가하지 않는다. SNS가 기자와 독자의 거리를 매우 좁혔다.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기자 이름과 SNS를 찾아 맹비난을 퍼붓고 커뮤니티·유튜브상에 신상을 공개한다. 특히 일부 정치 팬덤들의 사이버 린치는 일상화한 지 오래다. 이들은 지면과 전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합리적 토론과 비판을 나누는 언론 기능을 약화시킨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공론(公論)의 파수꾼인 언론인들이 기자실이 아닌, 원고석(原告席)을 찾은 현실이 바람직하진 않다. 뉴스 소비자와 생산자, 독자와 기자 모두 ‘기자는 기사로만 말한다’는 말의 의미를 성찰해볼 때다. 🍷

셰어런팅(Sharenting)과 디지털 시대 아동의 권리 보호

박아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부모로서 자녀의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탄생, 생일, 입학과 졸업 등 자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은 마음은 아날로그 시대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돌잔치에서 옷을 입지 않은 아이를 담요 위에 얹혀두고 찍었던 모습은 과거 앨범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사진이다. 아이가 성장하여 이런 사진을 가족, 친구들과 함께 볼 때는 민망하겠지만 그러한 민망함은 순간이었다. 앨범을 다시 덮어 서랍장 어디엔가 넣어두면 그대로 잊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이러한 사진은 영원히 박제된다. 자녀의 사랑스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아이가 울거나 화내거나 당혹스러운 모습은 온라인 공간에 영원히 저장되고 유포되며 때로는 더욱 불쾌한 모습으로 합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유(share)와 부모(parent)의 합성어인 셰어런팅(sharenting)으로 불리는데, 자녀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행위를 뜻한다. 셰어런팅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소셜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아동의 프라이버시와 권리 보호 측면에서 그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에서 이용자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활발해지고 셰어런팅의 문제점이 악화되었다는 해외 연구도 있다.¹⁾

틱톡(TikTok), 유튜브(YouTube) 숏츠(Shorts)와 같은 짧은 동영상도 유행하면서 이른바

1) L. Lin Ong et al. (2022). Sharenting in an evolving digital world: Increasing online connection and consumer vulnerability.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56, pp.1106-1126.

‘맘플루언서(mom과 influencer의 합성어)’라고 불리는 부모들은 온라인 조회수를 얻기 위해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실제로 아이가 겁에 질려 울거나 떨고 있는 모습, 아이가 흡연하거나 음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의 영상이 온라인에 업로드 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소셜 미디어상의 자극적 영상은 조회수를 높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부모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미국의 유명 유튜버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어 충격을 주었다. 미국 유타주에 사는 루비 프랭크(Ruby Franke)는 평소 6명의 자녀의 일상을 기록하는 유튜브 채널 ‘8 패시저스(8 passengers)’로 인기를 끌었으나 지속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2023년 8월 31일 체포됐다. 이러한 부모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2023년 8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를 소셜 미디어에 등장시켜 얻은 수익 중 일정 비율을 신탁·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결되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녀의 모습을 온라인 공간에 올리는 부모의 행동에 전 세계적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아동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위법한 셰어런팅을 규제하기 위해 각국에서 법률적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모습을 공유하는 것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제재가 당혹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 공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과 청소년의 영상과 이미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도의 제약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부모와 자녀 모두 온라인 공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셰어런팅의 위험과 아동의 권리

디지털 시대의 아동은 영유아기 때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게 된다. 식당이나 공원에서 부모들이 어린이에게 디지털 기기로 영상을 시청하게 하면서 식사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른 시기의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이러한 이용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2020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만 3~9세 어린이 미디어 이용자 중에서 약 60%는 대체로 만 2세 미만에 텔레비전을 접하고, 약 30%는 만 2세 미만에 스마트폰을 접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만 2세 미만 어린이는 전자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하며 만 2~4세 어린이는 하루 1시간 이상 전자기기 화면을 보지 않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한국 어린이의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훨씬 넘어선 약 4시간 45분에 달했다. 어린이의 82.8%는 스마트폰을, 79.7%는 스마트 TV를, 62.6%는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기준으로 어린이들의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유튜브 이용시간은 86.1분에 달했는데, 만화/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장난감 등 상품

소개, 게임, 교육, 음악/댄스, 먹방, 팻방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아동은 아직 자신의 디지털 활동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과 제도적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의 개인정보는 본인 스스로가 노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셰어런팅 등의 행위로 인해 부모에 의해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13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는 평균적으로 1,300여 장의 자녀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노출하며, 아동은 18세가 될 때까지 자신과 관련된 콘텐츠 7,000건을 소셜 미디어에 포스팅한다.²⁾ 부모의 셰어런팅은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한편,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시켜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릴 적 모습으로 인해 평판이나 인간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입을 수도 있다. 부모에 의해 촬영된 모습으로 인해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나 괴롭힘을 당할 위험도 있으며, 한번 유출된 어릴 적 이미지를 디지털 공간에서 완전하게 삭제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어린 시절의 디지털 족적(digital footprint)으로 영구히 남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셰어런팅을 통해 온라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동에 대해 법률적 제동이 강화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아동을 소셜 미디어에 등장시켜 벌어들인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신탁·예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SB1782)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어느 엄마가 아들에게 “강아지가 병에 걸렸어. 우는 표정을 지어봐”라고 울음을 재촉하자 아이가 흐느끼는 모습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 때문이었다. 이 동영상을 접하고 충격을 받은 15세 고교생 쉐리야 날라모투(Shreya Nallamouthu)가 셰어런팅 수익을 제한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쉐리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부모들이 온라인 가족계정에서 아동을 확대하거나 괴롭히는 영상이 증가했다면서 이러한 행태에 제동이 걸릴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방송 인터뷰에서 쉐리야는 “가정의 수입원을 소셜 미디어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때 자녀들을 동영상의 소재로 활용하고 특정 행동을 강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³⁾ 일리노이 상원의원 데이빗 코엘러(David Koehler)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아동학대와 괴롭힘에 입법 공백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했다. 2023년 8월 통과된 이 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법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부모는 16세 이하 자녀가 30일 동안 콘텐츠의 30% 이상 등장했다면 이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의 50%를 신탁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가령, 영상

2) Children's Commissioner (2018). Who knows what about me?: A children's Commissioner report into the collection and sharing of children's data. Nov. URL: <https://assets.childrenscommissioner.gov.uk/wpuploads/2018/11/cco-who-knows-what-about-me.pdf>

3) Bomke, N. (2023, 5, 15). Illinois girl's discovery leads to new legislation protecting children in social media video. (FOX 32 CHICAGO) URL: <https://www.fox32chicago.com/news/illinois-may-soon-allow-young-social-media-influencers-to-monetize-their-content>

에 자녀의 분량이 50%를 차지한다면 수익의 25%를 예치해야 하며, 자녀의 분량이 100%라면 수익의 50%를 예치해야 한다. 예치기준을 위배할 경우 부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법은 정부의 강제조치를 규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해당 가정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일리노이 법안의 초기 버전에는 미성년자였을 때 촬영된 모습을 본인이 지워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구체화한 법조항이 있었으나 법안 논의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일리노이법」은 캘리포니아의 「쿠건법」(Coogan Act)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 법은 찰리 채플린의 영화 ‘키드(The Kid)’에 6살의 나이로 출연했던 재키 쿠건(Jackie Coogan)의 이름을 딴 것이다. 성인이 된 쿠건은 자신이 아역배우로 활동하여 벌어들인 400만 달러를 부모가 다 써버렸다고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36년 제정된 「쿠건법」은 미성년자인 연예인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15%를 신탁 계좌(일명 쿠건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했다가 성인이 되면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쿠건법」과 「공정노동기준법」 등 아동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기존의 법률은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아동의 수익 보호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리노이법」은 미국에서 온라인 활동으로 인한 아동의 수익을 보호하는 첫 번째 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후 워싱턴, 메릴랜드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2020년 프랑스에서는 16세 이하의 어린이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2021년 4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이 법에 따르면, 아동 인플루언서들도 아동 모델이나 아동 배우처럼 프랑스 노동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아동 인플루언서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 중 일정 금액이 특정 계좌에 예치되어야 하며, 동영상 플랫폼은 미성년자들이 부모 동의 없이도 자신의 모습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때 이를 따라야 한다.⁴⁾

인터넷 공간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셰어런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아동에게 환원시키는 법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동의 디지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아동과 청소년도 데이터 보호가 요구되는 집단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 때 부모 동의가 필요함을 유

4) Boring, N. (2020. 10. 30). France: Parliament adopts law to protect child "influencers" on social media. (Library of Congress). URL: <https://www.loc.gov/item/global-legal-monitor/2020-10-30/france-parliament-adopts-law-to-protect-child-influencers-on-social-media/#:~:text=Under%20this%20new%20legislation%2C%20which,child%20models%20or%20child%20actors.>



럽연합 최초로 의무화한 법이다. ‘GDPR’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령으로서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제8조이다. 동조 제1항은 ‘아동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는 해당 아동이 최소 16세 이상인 경우에 적법하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아동이 16세 미만인 경우 그러한 처리는 해당 아동의 친권을 보유한 자가 동의를 제공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 따르면 아동 개인정보를 다루는 컨트롤러(controller)는 가용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해당 아동의 친권을 보유한 자가 동의를 제공하거나 승인하였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GDPR’은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가 결정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개념을 도입하여 제17조에 삭제권(right to erasure)도 규정했다. 삭제권이 보장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가 원래의 수집, 처리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②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단, 해당처리에 대한 법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③ 정보주체가 처리에 반대하는 경우로서 처리의 계속을 위한 더 중요한 사유가 없는 경우, ④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처리된 경우, ⑤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하여 삭제가 필요한 경우, ⑥ 아동에게 제공할 정보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이다. 이처럼 ‘GDPR’은 미성년자 관련 데이터 수집에 부모 동의를 요구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입법적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 설계를 바탕으로 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체계를 구축했어야 했다는 비판적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⁵⁾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은 아동을 타깃으로 하는 디지털 광고도 단속하고 있다.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법」은 유럽 내에서 월간 활성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는데, 구글(Google), 메타(META), 아마존(Amazon),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등 19개 글로벌 IT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유럽의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들이 해당법이 적용되는 플랫폼에 로그인할 경우 달라지는 사항은 크게 5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⁶⁾ 첫째, AI 추천 콘텐츠 시스템을 끌 수 있다. 이용자들은 프로필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개인 추천시스템을 끌 수 있으며, 자신이 팔로우하는 사람들 또는 친구들의 콘텐츠가 최신순으로 보이도록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유해 콘텐츠 신고가 쉬워진다. 이용자들은 법이나 플랫폼 정책에 위반되는 게시물이나 동영상, 댓글을 더욱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삭제할 수도 있다. 틱톡은 추가적인 신고 옵션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용자들이 광고를 포함하여 불법적이라고 생각되는 콘텐츠를 발견한다면 ‘혐오표현’, ‘괴롭힘’, ‘자살과 자해’, ‘오정보’, ‘사기’ 등의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이트댄스(ByteDance)도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팀을 발족시켰는데 자동화된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신고한 영상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셋째, 이용자들은 자신의 게시물이 삭제된 사유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보다 높은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구글은 투명성보고서에 콘텐츠 중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틱톡은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자동화된 기술에 의해 내려졌는지 여부 및 조치에 대해 반대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공개할 예정이다. 넷째, 위조품과 불법제품에 대한 신고가 용이해진다. 아마존은 불법제품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개설할 예정이다. 다섯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타겟 광고가 규제된다. 이에 따라 스냅챗(Snapchat)은 18세 이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화된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틱톡은 13~17세 유럽 이용자들의 활동에 기반한 맞춤형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메타도 13~17세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이용자들에게 팔로잉 등의 활동에 기반한 광고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따라서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서 광고주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연령과 지리적 위치뿐이다.

2023년 3월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아동의 초상 등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

5) Van der Hof, S. & Liebens E. (2018). The importance of privacy by designs and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s in strengthening protection of children's personal data under the GDPR. (Communications Law), 23(1), pp.33-43.

6) Chan, K. (2023, 8, 25). Europe is cracking down on Big Tech: This is what will change when you sign on. (AP). URL: <https://apnews.com/article/big-tech-crackdown-europe-digital-services-act-01a3146efd38b8838389919560c0ee5a>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부모가 자녀들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다. 부모는 공동으로 자녀의 초상권 공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한 쪽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개를 금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초상 공개가 중대하게 자녀의 품위와 존엄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1998년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삼지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라 하더라도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실질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삼는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 주제의 관련성, 시청각적 내용, 움직이는 캐릭터나 아동 지향적 활동, 모델의 연령, 아동에게 인기 있는 유명인의 등장, 아동에게 직접 노출되는 광고 유무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이 법은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개에 대해 부모와 같은 법정대리인에게 사전고지를 하여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운영자는 전화, 영상통화, 신분증 확인, 이메일, 온라인 지불시스템 등의 방법을 통해 법정대리인의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권리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혁신이 빨라지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비 중이라고 2023년 5월 발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법적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공식원칙으로 명문화되어 관련 법률과 시행령 정비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이러한 권리장전에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한 내용 및 잊힐 권리, 디지털 감시와 위치추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등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시범사업도 시작되었다. 2023년 4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만 24세 이하 국민이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을 때 이를 삭제 또는 접근 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지우개’로 불리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서는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만 삭제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시행된 두 달 동안 신청된 3,488건을 분석한 결과, 게시물 삭제를 가장 많이 요청한 연령은 15세로 나타났다. 또한 삭제요청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유튜브 931건(26.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페이스북 632건(18.1%), 네이버 593건(17.0%), 틱톡 515건(14.8%), 인스타그램 472건(13.5%)의 순이었다. 접수된 사례에는 과거에 작성한 글을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하여 게시물 삭제를 할 수 없는 경우,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을 분실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내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콘텐츠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인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의안번호 2109966)이 2021년 발의된 바 있다. 이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실제 부모와 함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아동과 청소년 입장에서 노동과 놀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촬영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동의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을 포함한 모든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출연료, 광고료 등 수익을 만 16세가 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광고주나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등은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출연료, 광고료 등을 인출 금지된 계정으로 입금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을 촬영할 당시에는 수익 창출의 목적이 없었으나 추후 수익이 창출된 경우에는 법적용이 불분명하며, 수익 창출 목적의 동영상이라도 이를 문체부 장관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아동의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는 인정되나 보다 정교하게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더욱 커진 아동 보호 필요성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삶은 아날로그 시대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재현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초상과 성명, 기타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수집 및 처리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아동은 부모에게 부속된 존재가 아닌 독립적 주체로서 그 권리가 보장되고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아동의 디지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의 잊힐 권리를 적절하게 구현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과 절차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 

X(트위터) vs 스레드, 단문 메시지 플랫폼의 경쟁이 의미하는 것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1. 단문메시지 플랫폼 경쟁 시대

2023년 7월 5일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 왓츠앱(WhatsApp)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Meta Platforms, Inc.)가 신규 서비스 스레드(Threads)를 출시했다. 스레드는 트위터(Twitter)의 복제품으로 불리는 단문메시지 기반의 서비스로,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메타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M. Zuckerberg)가 야심차게 준비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다. 소셜미디어 제국의 제왕으로 불리는 저커버그가 트위터가 지배하던 영역에 진출함으로써 단문메시지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트위터에도 전례 없던 변화가 시작됐다. 트위터는 2022년 10월 28일 테슬라



(Tesla)와 스페이스X(SpaceX)를 창업해 성공을 일궈낸 일론 머스크(E. Musk)에 인수됐다. 인수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인수 의사를 철회하고 번복하는 등 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트위터는 머스크의 품에 안겼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는 단지 기업 소유주 교체와 지배구조의 변화를 넘어서는 차원으로 이어졌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직원들을 대거 해고하고 유료 서비스를 내놓은 데 이어 서비스 이름과 로고도 X로 변경했다. 기존 트위터의 서비스 구조와 운영 방침, 지향점에서 확연히 다르다. 머스크의 X는 트위터의 서비스 방식과 구별되는 수준을 넘어, 기존과 전혀 다른 단문메시지 기반의 신규 플랫폼 등장으로 여겨진다.

X와 스레드로 인해 생겨나고 있는 단문메시지 서비스 업계의 변화와 의미, 전망을 살펴본다.

2. 스레드 출시와 트위터의 X 재탄생

1) 스레드 출시

메타가 스레드를 출시한 직후 X의 법무팀은 저커버그 앞으로 메일을 보내, “메타가 트위터 출신 직원을 고용해 앱을 베꼈고 자사의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스레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스레드는 X와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꽤 있다.

메타가 출시한 스레드는 모바일에서만 작동하는 단문메시지 앱이라는 점과 인스타그램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스레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게 필수다.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으면 스레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인스타그램에 가입해야 한다. 인스타그램과의 연동을 통해 별도의 계정 생성과 가입 절차가 없다는 점은 스레드의 초기 시장 진입과 안착에 유리한 점이다. 인스타그램의 월간 활성 이용자가 20억 명인 점을 고려하면, 인스타그램의 10%만 가입을 한다고 해도 단숨에 2억 명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X의 이용자가 2억 5천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X는 기본적으로 글자수 280자의 제한을 받지만, 스레드에서는 최대 500자의 텍스트를 사진이나 링크, 영상과 함께 업로드할 수 있다. 영상은 최대 5분까지 허용된다.



스레드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로그인할 뿐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는 모든 계정을 쉽게 팔로우할 수 있으며, 프로필 정보도 그대로 불러올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받은 인증도 이전돼 인스타그램에서 인증된 파란색 배지는 스레드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 스레드는 현재 광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서비스 초기에 사용자를 넓히고 우호적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스레드에서 자신이 쓴 게시물은 인스타그램처럼 메인 화면 오른쪽 아래의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시물은 X처럼 표시된다. 스레드엔 없는 기능도 여럿이다. 검색 기능이 없고 실시간 트렌드를 확인할 수 없으며, 해시태그와 쪽지(DM) 기능이 없는 게 X와 구별되는 점이다.

스레드 초기 인기는 거품?

스레드는 7월 초 높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두 달 여가 지난 시점에서 점검해보면 초기의 기대와 거품이 사라지면서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스레드 앱은 출시 2시간 만에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서고, 5일 만에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하며 '역사상 가장 빠르게 보급된 서비스'라는 기록을 만들었다. 스레드 이전에 최단 기간에 사용자 1억 명에 도달한 서비스는 오픈AI가 출시한 생성 인공지능 '챗GPT'였다. 2022년 11월 30일 출시된 챗GPT는 유례없이 높은 관

심 속에 두 달 만에 이용자 1억 명에 도달했다. 이에 비하면 스레드에 대한 초기 열기는 열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스레드는 빌 게이츠(B. Gates), 오프라 윈프리(O. Winfrey), 엘렌 드제너러스(E. Degeneres), 샤키라(Shakira) 등과 같은 유명인들도 속속 참여해 글을 올리며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관심과 사용자 참여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소셜미디어 통계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밀러웹(SimilarWeb)에 따르면, 출시 직후인 7월 7일, 스레드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4900만 명에 달했지만 일주일 뒤에는 절반 이상 줄어든 2360만 명으로 떨어졌다. 리서치기업 센서타워(SensorTower)의 데이터에 따르면, 7월 말 스레드의 일일 활성 사용자는 최고치에 비해 82% 감소한 800만 명에 불과했다. 사용 시간도 이용자 평균 하루 2.4분으로 나타나, 7월초에 비해 80% 이상 감소했다. 이에 비해 X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2억 명,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30분에 달한다.

스레드는 100여개 나라에 출시됐지만, 유럽연합(EU) 국가에는 출시하지 않아 유럽연합 시민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디지털서비스법」, 「디지털시장법」 등 유럽연합이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률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메타의 반발 또는 요건 불충족이 배경이다.

2) 트위터의 변화와 X

머스크가 440억 달러(약 57조 원)에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머스크는 트위터의 운영규정과 문화, 수익구조 등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

트위터는 매출의 약 90%를 광고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머스크는 이러한 트위터의 수익 구조를 수술하고 있다. 인수하자마자 전체 직원의 75%를 해고해, 인수 당시 약 7000명이던 직원을 약 1500명으로 감축했다.

광고 의존을 줄이기 위해 공격적인 유료화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업·기관·유명인 등에 붙는 ‘블루체크’ 인증을 유료로 전환하고 유료 구독 모델(트위터 블루)을 출시했다. 돈을 낸 회원은 설문조사 등 각종 기능을 쓸 수 있고 장문의 트윗도 가능하다. 머스크의 인수 이후 광고 수익은 거의 절반가량 떨어진 상태다.

2023년엔 이용자들이 하루에 볼 수 있는 게시물 수에 제한이 걸렸다. 트위터의 회장과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고 있는 머스크는 2023년 7월 1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월 8달러를 내고 ‘트위터 블루’ 체크를 받은 유료 계정은 하루 6000개 계

시물을 볼 수 있지만, 인증이 없는 일반 계정은 600개까지 읽을 수 있다. 새로 가입한 미인증 계정은 300개로 제한된다”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다시 글을 올려 “등급별 한도는 인증 계정 8천개, 미인증 계정 800개, 신입 미인증 계정 400개로 곧 늘어났다”라고 발언을 수정했다. 머스크는 열람글 제한에 대해 “극단적인 수준의 데이터 수집과 시스템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제한이다”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2022년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다른 기술 회사들이 트위터의 방대한 게시물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해 인공지능(AI)의 언어모델 훈련에 쓰고 있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한 바 있지만, 트위터 유료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트위터는 또한 온라인상에서 검색창을 통해 접근하는 경로도 차단했다. 전에는 계정이 없는 사람도 로그인하지 않고 검색을 통해 트위터의 공개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로그인 창이 먼저 표시돼 트위터 계정으로 로그인해야만 게시물을 볼 수 있게 바뀌었다.

콘텐츠 정책도 변경됐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콘텐츠 정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물들의 계정을 속속 복원시켰는데 혐오나 극우적인 내용을 다루는 트윗이 증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뒤 폭력 선동 혐의로 트위터에서 영구정지 됐던 도널드 트럼프(D. Trump)에 대한 제재도 없던 일로 돌려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2021년 1월 6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지 이틀 만에 트위터에서 영구정지 제재를 받았으나,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다음 달인 2022년 11월 20일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을 되살렸다.

또한 2022년 12월 영국 <더 타임스>(The Times)에 따르면,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트윗)이 크게 늘었다. 영국 런던대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내용의 트윗(#기후사기 등)은 2020년 22만 건, 2021년 65만 건이었는데, 2022년 85만 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뒤 콘텐츠 관리팀을 해고하고, 기후 위기를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캐나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J. Peterson) 등의 계정을 복원한 것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트위터’, ‘파랑새’ 버리고 ‘X’로

머스크는 2023년 4월 트위터의 법인 이름을 ‘트위터’에서 ‘X’로 변경한 데 이어,

7월 24일엔 트위터의 로고마저 파랑새에서 알파벳 ‘X’로 바꾸고 서비스 명칭도 ‘트위터’에서 ‘X’로 바꿨다. ‘트위터’라는 이름을 아예 지운 것이다. 2006년 트위터 설립 이후 17년 동안 사용해온 서비스 이름과 로고를 X로 바꾼 데 대해, 많은 이용자들은 반발하며 서비스를 떠났고 시장은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위터 로고를 파랑새에서 X로 교체하겠다고 선언한 뒤 기업 가치가 약 40억 달러(약 5조 1천억 원)~200억 달러(25조 6천억 원) 정도 떨어졌다는 투자업계의 분석 내용을 보도했다.

머스크에게 있어 ‘X’는 단순한 서비스 명칭과 로고를 뛰어넘는 의미다. 머스크에 의해 X의 최고경영자로 임명된 린다 야카리노(L. Yaccarino)는 “X는 오디오·비디오·메시징·결제·뱅킹을 중심으로 한 무한한 상호 작용의 미래 상태이며 아이디어, 상품, 서비스 및 기회를 위한 글로벌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X는 우리가 이제 막 상상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우리 모두를 연결할 것입니다.”라고 트위터에 밝혔다. 머스크는 2022년 10월 트위터를 인수할 때 트위터를 중국의 ‘위챗’(WeChat)과 같은 범용 앱 개발의 도구로 여긴다는 생각을 밝혔다. 중국의 위챗은 메시징 플랫폼으로 출발했지만, 검색·게임·영상통화·상거래·뱅킹·결제 등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를 포괄하는 ‘만능 앱’이다.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2023년 8월 31일 기사에 따르면, X는 머스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상징적 알파벳이다. 1999년 머스크는 온라인 결제 회사인 X.com를 창업해 페이팔(PayPal)과 합병해 큰 성공을 거뒀다. 머스크는 합병 뒤 회사 이름을 페이팔 대신 X.com으로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머스크는 우주개발 기업 스페이스X를 설립하고 전기 자동차회사 테슬라에서 모델X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아들 중 한명의 이름을 X로 지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벤처인 xAI를 출범시켰다. X세대, X선 등 미지의 상징으로 쓰여온 알파벳 X에 매료된 머스크에게 X는 참신하고 흥미로우며 미개척지인 동시에 무한한 사업의 영역을 뜻한다. 머스크가 트위터의 유산과 브랜드를 버리고, X를 소셜미디어 기반의 미래형 확장 플랫폼으로 변신시키려는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3. 향후의 변화와 시장 판도

트위터에 대한 대항마로 등장한 스레드의 초반 관심과 인기가 지속되지 못하고 반짝 거품으로 사라질지, 아니면 인스타그램과의 연계성, 메타의 소셜미디어 역량



으로 인해 성장세로 돌아설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스레드 출시 초기에 완비되지 못한 여러 기능과 서비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보완되고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스레드에는 출시 시점에서 몇몇 주요 기능이 없고, 스레드 계정을 삭제하려는 사용자에게 인스타그램 프로필도 삭제하도록 한 정책에 대한 이용자 반발도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서비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문제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왓츠앱을 운영하는 메타가 축적한 소셜미디어 역량은 상당부분 스레드에도 이전될 것이다. 스레드 출시 2주 뒤 저커버그는 플랫폼의 이용 감소를 인정하면서 향후 몇 주 안에 검색 및 웹 버전, 인스타그램 쪽지를 통한 스레드 게시물 공유 기능 등 앱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스레드의 일일 활성 사용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인도(25%)다. 그 뒤를 미국(15%), 브라질(11%)이 잇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양한 국가에서 주목받는 소셜미디어가 될 가능성도 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트럼프 계정 복원, 서비스 명칭과 로고 변경 등으로 인해 다수의 이용자가 반발하고 서비스에 등을 돌렸지만, 통계 차원에서 확연한 이용자 이탈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머스크가 트럼프 계정을 복원한 뒤 20분 만에 200만 명이 팔로우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지금까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대한 반발로 트위터를 대체하려는 유사 서비스가 여러 등장했지만 괄목할 성과를 거둔 곳은 없는 상황이다. 마스토돈(Mastodon), 블루스카이(Bluesky), 스피ل(SPILL), 서브스택 노트(Substack Note)등이 트위터 대체재를 표방하고 출

시됐지만 트위터에 실질적 타격을 준 서비스는 없다. 업계에서는 스레드 역시 현재로서는 트위터의 자리를 대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다.

트위터는 전통적 뉴스미디어보다 빠르고 광범하게 정보와 뉴스를 전달하며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매스미디어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유수단으로 자리잡고 실시간 정보 유통과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끼쳐온 정보 플랫폼이다. 16년 동안 트위터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며 확고하게 자리잡은 영역에 스레드가 경쟁자로 등장하고, 트위터 또한 세계 최고부자 머스크에 인수되어 X로 탈바꿈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적 경쟁과 이용자 규모 변화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2006년 트위터가 개척해 성가를 쌓아오며 확대해온 영역에서 선발업체의 지위가 유지되느냐, 후발업체에 의해 대체되느냐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다.

4. 트위터 시절과 결별...새로운 사회적 감시와 요구 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단문메시지 플랫폼에서 거대 기술기업들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X와 스레드는 각각 해당 분야에 뛰어난 기술력과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모회사를 두고 있으며, 카리스마를 지닌 최고경영자가 주도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소셜미디어에서 경쟁하는 두 최고경영자는 2023년 7월 오프라인 무대에서 만나 육체적 대결을 벌이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했을 정도로 상대에 대한 강한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불발된 신체적 대결이 소셜미디어에서 더 강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앞으로 X와 스레드가 경쟁할 소셜미디어 영역에서 고려할 주요한 요인이 몇 가지 있다.

그중 하나는 머스크의 등장으로 인해, 강한 정치적 의도가 작용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를 알려주듯 머스크의 X 인수 결정에 영향을 끼친 내밀한 사연이 최근 드러났다. 미국의 저명한 전기(傳記)작가 월터 아이잭슨(W. Isaacson)은 2023년 8월 31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 흥미로운 내용을 공개했다. 아이잭슨은 9월 출판되는 머스크의 전기 <일론 머스크>에서 트위터 인수 과정에 관련해 머스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움직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았는데, 출판 2주 앞서 언론에 이를 공개한 것이다.

아이잭슨 기고에 따르면, 머스크는 유색인종, 성소수자 등 사회적 사안에 대한 '정치적 올바름'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미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특히 머스크는 큰 아들 자비에르(Xavier)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머




스크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머스크는 이런 배경에 인터넷상의 ‘정치적 올바름’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머스크가 보수 여론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트위터를 인수했는데, 포용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트위터의 문화와 분위기는 머스크의 성향과 대적점에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의 트위터 사옥 화장실에는 “성별 다양성을 환영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고 매달 ‘정신적 휴식의 날’이 운영되며 영구적인 재택근무 옵션도 있다. 이와 함께 트위터 내부에서 흔히 쓰이는 ‘심리적 안전’ 등의 용어와 업무관행에 대해 머스크는 경악했고 이를 긴박감, 진보, 속도의 적이라고 생각하며 로고와 직원, 기업문화 등 트위터의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마음먹었다는 내용이다. X의 운영원칙과 방향에 관해 머스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는 일화다.

또 다른 포인트는 X와 메타 모두 자유로운 의사소통 플랫폼보다는 중독성과 유해성을 무릅쓰는 강력한 상업적 목적을 지닌 업체라는 점이다. 트위터의 공동창업자인 잭 도시(J. Dorsey), 비즈 스톤(B. Stone)이 트위터를 정보 플랫폼으로 정체성을 만들어온 관행 및 역사와 비교하면 판이하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뒤 뉴스피드를 둘로 구분했다. ‘추천’과 ‘팔로우중(中)’으로 나뉘서 게시글을 보여주는데, ‘추천’이 기본으로 설정된다. 이전의 트위터에서는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구조였는데, 알고리즘과 운영진이 설정한 콘텐츠가 ‘추천’ 형태로 우선 제공되면서 운영진이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스레드도 마찬가지로 뉴스피드에서 ‘추천’과 ‘팔로잉’을 제공하는데 기본설정이 ‘추천’이다. 즉 이용자의 선택보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뉴스피드를 우선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이 약화된 구조다. 페이스북의 잇단 내부고발 사례에서 보듯, 메타는 사용자 데이터와 사용 패턴을 바탕으로 참여도, 사용 시간, 타겟팅 광고 가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 위주로 재구성하여 사용자들의 중독성을 높이는 기업이다. 점유율과 수익 확대를 위해서 중독성 강한 콘텐츠가 알고리즘에 의해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우려가 높다.

거대 기술기업들의 단문메시지 서비스 경쟁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요구가 필요해지는 까닭이다. 

당사자 스스로 공개한 전과를 기사화한 언론, 손해배상책임 부담할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2842 손해배상 판결 분석 —

장윤미 법률사무소 삼정 변호사, 前 언론중재위원

I. 사건의 개요

전직 신문기자이자 인터넷언론사 대표인 A씨는 2021년 4월경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모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청년들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찍은 건 후회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갖고 OOO 유세차량에 오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정부가 투기세력을 못 잡았다고 투기세력 차량에 오르면 어떡해. 이 영상에 등장한 바보 20대들이”, “애네들 얼굴 잘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보러오면 반드시 떨어뜨리세요. 건실한 회사도 망하게 할 애들입니다. O정당 지지해서 문제가 아니라, 바보라서 문제입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하였다.

이후 언론사 B, C, D 3곳은 A씨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이 때 A씨의 과거 마약 전과를 적시하였다. B 언론사의 경우 3명의 기자가 각자 2021년 4월 3일 1건 및 4월 4일 2건, 총 3건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마약을 투약해 경찰에 체포된 후 해고된 전 일간지 기자가 최근 O정당 OOO 후보지지 연설을 한 청년들에게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비하 발언을 했다”라며, 과거 A씨가 마약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게 체포된 사실,

A씨에 대한 모발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던 사실, 이후 A씨가 소속 언론사에서 해고된 사실,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 등을 기사화하였다.

언론사 C의 경우 2021년 4월 4일자 인터넷기사에서 “마약을 투약해 경찰에 체포된 후 해고된 전 일간지 기자가 최근 O정당 O시장 후보지지 연설을 한 청년들을 향해 (중략) 저주를 퍼부었다”며 A씨가 마약투약 혐의로 입건된 뒤 다니던 언론사에서 해고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사화하였다. 언론사 D 역시 같은 날 “필로폰 실형 A O언론 전 기자, SNS 막말”이라는 제목 하에 A씨의 마약 전과를 적시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A씨는 언론사 B, C, D 및 해당 기사를 작성한 소속 기자 5명에게 기사삭제를 구하며, 여기에 더해 각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 별로 공동으로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가 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었고, 본인이 처벌받은 사실을 공론화하며 마약 퇴치운동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 사실도 있었다. 하지만 A씨의 마약 전과와 A씨가 SNS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20대 청년들을 비판한 행위와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 경우 해당 기사들을 불법행위에 기한 것으로 평가해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까.

II. 대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2842 손해배상 판결

가. 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언론사의 주장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은 A씨가 과거 스스로 마약 전과를 공개하였기 때문에 마약 전과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소권(訴權)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같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요건 자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여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원고의 소제기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제기 자체가 적법하여 실제적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소송의 핵심 쟁점은, A씨 스스로 밝혔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을 기사화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인지, 이에 따라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가 되었다. 원고인 A씨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근거 규정은 「민법」 제751조 제1항인데, 해당 조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본인이 공개한 과거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은 A씨의 마약 관련 전과는 이미 대중들이 알고 있는 공개적인 정보인데다가 A씨 스스로 공공연하게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밝힌 적이 있으므로 해당 기사로 A씨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A씨가 일간지 기자로 재직 중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되었을 때 해당 사건이 여러 차례 기사화되었던 바 있다. 앞서 기술한 대로,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이후 마약 퇴치운동을 하며 본인의 마약 전과를 스스로 공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가 공개한 범죄이력을 보도한 것이더라도 피고들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환기하여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대법원 2020도5813 판결 등). 법원은 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A씨의 마약 전과를 보도한 것은 본인이 공개한 사실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며 피고들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기사삭제의 법적 근거 및 삭제 범위의 판단 기준

A씨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뿐 아니라 기사삭제도 청구하였다. 그런데 기사삭제에 대한 명문 규정은 현행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에서 기사삭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도 기사삭제로 조정이 귀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¹⁾ 대법원이 판례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하는 (중략)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다60950 판결 등). 위 판시에서 언급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할 수 있다는 부분이 기사삭제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위 판례를 인용하며,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의 기사삭제를 명하였다. 삭제 대상이 된 부분은 사실상 A씨의 마약 전과와 관련된 내용 전부였다. 법원은 언론사 B의 기사 중 A씨가 과거 모 신문사 기자로 재직하던 중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 마약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체포된 뒤 모발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 A씨가 당시 소속되었던 언론사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된 사실,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삭제하라고 판단하였다.

언론사 C와 D에 대해서도 A씨의 과거 처벌전력과 관련한 기사내용은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법원은 삭제를 명한 부분이 “보도의 전체 문맥이나 의미 구조상 필수적이라거나 나머지 기사 내용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정리하면, 법원은 현존하는 침해에 대한 ‘민사상 방해배제청구권’에서 기사삭제의 법적 근거를 도출한 뒤 삭제의 범위를 판단할 때 ① 해당 기사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② 기사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③ 기사의 구조상 필수적인 내용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편 법원은 피고들의 언론 매체로서의 사회적 영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A씨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각 5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양재규 (2022. 6. 9). 기사삭제청구권은 없어도 기사삭제는 있다. <반론보도닷컴>. URL: <https://www.banronbod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65>



라. 마약 전과 내역을 보도한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은 A씨가 공적인 존재이고, A씨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발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두어야 할지 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씨의 전과를 언급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였다. 피고들의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이므로 삭제 대상이 될 수 없고, 불법행위의 위법성 또한 조각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각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하였다. 그 근거로 4가지 사유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A씨의 마약 전과 사실이 기사의 내용과 무관하게 제목이나 본문에 적시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테면 해당 기사들이, A씨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소개한 뒤 이에 대한 청년들 반응, 국회의원의 비판 의견을 보도하고 이어지는 문단에서 느닷없이 A씨의 마약 전과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또 언론사 B, C, D는 전부 기사의 제목에서부터 A씨의 마약 전과를 거론하였는데, “마약 해고된 前 기자”, “마약 투약 前 일간지 기자”, “필로폰 기자”, “필로폰 실행 모 언론 전 기자”라는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식이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둘째, 법원은 A씨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문제 삼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A씨의 마약 전과가 서로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A씨의 마약 전과가 보도된다고 해서 A씨의

발언에 대한 신빙성이 탄핵되는 것도 아니고, 마약 전과는 해당 기사들이 보도되기 3년 전 즈음 이미 확정돼 마약 전과를 보도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셋째, A씨가 스스로 전과 사실을 알렸다고 해도 그 목적은 마약 범죄 관련 수사 상황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데 있었고, 넷째, A씨가 기자로서 공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마약 전과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공적인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III.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법원은 기본적으로 언론사에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언론이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적대적인 사실관계나 대상에 대한 취재를 할 때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판례평석에서 다른 기사들의 경우, 법원에서 책임을 지우는 데 신중을 기해 온 다른 기사들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언론사들이 A씨가 올린 정치적 게시글에 대한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쓰면서 마약 전과를 거론한 데에는, A씨의 말은 믿을 수 없고 그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폄훼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이 재판 과정 중 ‘기사에서 마약 전과를 거론한 것은 게시글의 신빙성을 독자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이 지적한대로 A씨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마약 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본인이 밝힌 전과라고 하더라도 언론이 과거 범죄이력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기사에서 불특정 독자들에게 ‘A는 마약 사범이다’라고 언급할 자유는 허락되지 않아야 한다. 보통 ‘메시지’에 대한 공격이 어려울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특히 언론사로서는 이와 같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의 기사를 지양하여야 한다. 이번 판결은 사실 적시, 특히 당사자가 공개한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당 1심 판결에 대해 언론사들은 항소하지 않았고, 결국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용한 정보의 정확한 출처로 독자를 안내하자

이샘물 동아일보 디지털이노베이션팀장

언론에서 해외 소식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면 의아한 지점을 포착할 때가 있다. 기자가 한국에서 기사를 작성했고 기사에서 다룬 현장에 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접 취재한 것처럼 누군가의 발언이나 분위기를 전하는 것이다. 갑작스런 사건·사고의 목격자들이 생생한 발언을 전하고 해외 고위 관리가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명확한 출처는 없다. 전후사정을 따져봤을 때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닌 것이 자명한데, 어디를 인용한 보도인지 알 수가 없다. 기사 초반에 'OO 외신에 따르면'이라는 문구가 한두 번쯤 등장하지만, 기사 말미에 등장하는 멘트도 OO 외신에 따른 것인지 제3의 출처를 인용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포격을 다룬 기사¹⁾를 보자.²⁾

러시아군이 발사한 S-300 지대공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부상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27일(현지시간) 동부 크라마토르스크 소재 식당

1) 정윤영 (2023. 6. 28). 러軍, 우크라 동부 식당 포격...3명 숨지고 40여명 부상. <뉴스1>. URL: <https://www.news1.kr/articles/?5090566>

2) 이 글에서는 출처 표기상 어느 언론사에 표기된 기사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나, 그 취지는 특정 언론사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아울러 이 같은 표기 관행은 특정 언론사를 넘어 대다수의 언론사에 퍼져 있다.

한곳을 포격해 최소 3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크라마토르스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치열한 공세를 주고 받는 최전선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중략—

포격 당시 식사 중이던 목격자는 “식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막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친구 중 한 명은 이제 잔해 아래에 갇혔다. 잔해 밑에는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포격 당시 막 식당에 도착한 32세 루슬란은 미사일이 식당 안에 있던 무리를 명중했다면서 “나는 이제 막 도착했기 때문에 운이 좋게 피했다”고 **회상했다**. 그의 **이복 동생인 니키타는** 잔해 속에서 부상자들을 꺼낼 수가 없었다면서 **흐느꼈다**.

기사 초반에 언급된 ‘AFP통신에 따르면’이라는 문구를 통해 추후 등장한 목격자 발언이 AFP통신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지만, ‘확신’할 순 없다. 목격자 발언을 다룬 문장에서 그것을 어디서 얻었는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가 설명했다”, “누가 흐느꼈다”와 같은 표현은 그 설명을 직접 듣고 흐느끼는 것을 직접 목격했을 때라야 쓰는 표현이다. 사람 간에 대화를 할 때도 본인이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면 “설명했다” “흐느꼈다”고 하지 않고, “설명했다고 누가 말하더라” “흐느꼈다고 누가 말하더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다는 표기가 없는 기사에서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면 어색하기 마련이다.

문장마다 일일이 출처를 표기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매 문장에 ‘OOO에 따르면’, ‘OOO에 전했다’라고 표기할 경우 동어 반복을 하게 되거나 글의 리듬감이나 감칠맛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취재한 사안이 아니라면 독자들은 출처가 없는 발언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확인하거나 가늠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언론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발언일 때 출처 표기를 더욱 관대하게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발언이니 그것을 ‘무엇을 통해’ 밝혔는지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포격 당시를 다룬 또 다른 기사³⁾를 예로 들자면 이런 식이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서 전투가 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민간인 3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다.

3) 최재서 (2023. 7. 2). 우크라이나 동부, 러군 포격에 3명 사망·바흐무트 등 전투 격화.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2010400009>

1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파울로 키릴렌코 도네츠크주 주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민간인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중략—

남부 헤르손주 올렉산드르 프로쿠딘 주지사도 밤새 어린이 1명을 포함한 5명이 다쳤으며 러시아군이 대포와 드론, 박격포, 로켓 등 82발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북동부 하르키우주에서도 전날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57세 민간인 남성 1명이 다쳤다고 올레흐 시네후보우 주지사는 말했다.

—하략—

해당 기사의 바이라인에서 기자는 '서울'에서 보도한 것으로 표기돼 있다. 그렇다면 프로쿠딘 주지사의 발언과 시네후보우 주지사의 발언은 어디서 취재된 것일까. 직접 인터뷰해 얻은 발언이 아니라면 출처가 표기되는 것이 마땅한데, 무엇을 통해 밝힌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해외 현지에 취재기자가 없는 경우 국제뉴스는 대부분 외신이나 온라인 상 확인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그런데 심지어 인용한 매체를 일부 흐리는 경우도 있다. 다음 기사⁴⁾를 보자. '확인한 내용'은 있는데, 출처가 된 '현지 언론'과 '현지 매체들'은 특정되지 않았다.

지난 6월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킨 후 와해설이 돈 민간 용병 단체 바그너그룹이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오히려 세력을 확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숙청설까지 제기된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최근 대외 활동을 재개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바그너그룹이 러시아군에 흡수돼 완전히 해체되리라는 일부 전망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용병을 파견해 영향력 확대 기회로 삼아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바그너그룹 같은 민간 용병 기업(PMC)이 여전히 이용 가치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1일(현지 시각) 아프리카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그너그룹은 최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중아공)에 용병 수백 명을 새로 파견했다. 이들은 지난 30일 중아공에서 치러진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의 치안

4) 정철환·류재민 (2023. 8. 1). 아프리카에 또 나타났다... '국제 조폭' 된 바그너 그룹. <조선일보>. URL: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8/01/4Q25UKHQCVDLRAN7F7UI30VMLU/

유지를 맡았다고 알려졌다. 앞서 지난 28일 프리고진은 카메룬 매체 '아프리카미디어'에 "중아공에 새로 도착한 바그너그룹 병력은 기존 병력의 교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 기존 병력 철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매체들은 "야당과 반정부 세력의 투표 방해를 막으려 병력을 사전에 증강한 것"이라며 "(중아공 정권을 옹호해 영향력을 키우려는)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하락-

기자는 직접 취재하며 검증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기에 사실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누군가가 어떤 발언을 했다면 그것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내용이 맞는지까지 검증해야 하는 게 저널리즘의 엄중함이다. 해외 이슈 보도의 경우 몇 명이 다쳤고 포탄이 몇 개나 날아왔는지를 국내에서 직접 취재해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출처 표기라도 명확해야 한다. 최소한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명확한 출처 표기라는 것이다. '어느 매체'에서 취재했거나 유명 인물이 '무엇을 통해' 밝힌 내용인지를 일일이 언급함으로써 독자가 출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 에디터로 일하던 알프레드 프렌들리(Alfred Friendly)는 이렇게 말했다.⁵⁾

"직접적으로 목격한 지식이 아닌 사건이나 조건, 상황에 대한 뉴스와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적인 인용이다. 이것이 독자에게 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의 신뢰성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항상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까닭에 출처 표기는 외신 보도를 넘어서 모든 기사에 필수적이다. 해외 우수 언론사들은 기자들이 무언가를 보도할 때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느 경로를 통해 나왔는지를 표기하게 한다. 보도자료에서 나온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말했다고 말하고, 누군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말한 것은 어디를 통해 말했다고 언급하는 식이다. 이를 명기한 가이드라인도 볼 수 있는데, <NPR>은 윤리 핸드북을 통해 "모든 것을 인용하라"며 주문한다.⁶⁾

"인용하고, 인용하고, 조금 더 인용하라. 다른 출처로부터 오는 어떤 자료도 인용 없이 문자 그대로 혹은 상당히 포함돼서는 안 된다. <AP> 보도로부터 오는 자료를 포함해서 말이

5) Friendly, A. (1999). 1958: Attribution of News. <Nieman Reports>. URL: <https://niemanreports.org/articles/1958-attribution-of-news/>

6) National Public Radio (2023. 8. 7). <NPR Ethics Handbook>. URL: <https://www.npr.org/about-npr/688424402/special-section-attribution>



다. -중략- 기사를 인용할 때는 뉴스 미디어에 종사하는 동료들에게 공정해야 한다. 우리는 <NPR> 기사에 대한 인용 표기를 할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단독이나 기획기사에 대해 출처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대하다. 다른 조직의 기사를 발췌하거나 인용할 때 그 조직에(언론사에) 관심이 가도록 해야 하며, 자사가 관심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단순히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넘어서 하이퍼링크를 통해 원 소스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통용된다. 미국 온라인뉴스협회(Online News Association)는 ‘윤리’ 항목을 통해 “온라인 기사에서 링크로 안내하는 것은 인용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이것은 이용자들이 단순히 인용 문구 하나보다 더 상세히 정보원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을 돕는다”고 안내한다.⁷⁾ 영국 온라인매체협회(Association of Online Publishers)는 원 출처에 대한 링크를 누락하는 것은 원 소스가 된 언론사의 트래픽과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판단 하에 출처를 명시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만들기도 했다.⁸⁾ 협회에 등록된 언론사들이 자사 기사에 대해 제대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타사에 연락하는 방식으로 추후에도 하이퍼링크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7) Online News Association (2023. 8. 7). <Sources: Reliability and Attribution>. URL: <https://ethics.journalists.org/topics/sources-reliability-and-attribution/>

8) Joseph, S. (2021. 11. 29). ‘Exclusive is illusive’: U.K. publishers launch plan to mitigate loss of traffic when sources aren’t properly cited. <Digiday>. URL: <https://digiday.com/media/exclusive-is-illusive-u-k-publishers-launch-plan-to-mitigate-loss-of-traffic-when-sources-arent-properly-cited/>

국내 언론은 종종 자사 기사의 영향력이나 웹사이트의 트래픽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자사 기사의 링크를 걸지만, 타사 기사에 대해서는 링크를 거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링크는 ‘좋은 저널리즘에 관한 것이다. 기자 출신으로 루이지애나주립대 교수를 지낸 스티브 버트리(Steve Buttry)는 출처를 링크하는 것이 좋은 저널리즘이라며 이렇게 말했다.⁹⁾

“저널리스트는 종종 다른 저널리스트의 업무 결과물에 의존한다. 다른 저널리스트의 업무 결과물을 인용하거나 재정리한다면 이름과 링크를 표시하라. 좋은 저널리즘은 단순히 표절을 피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다. 디지털 저널리즘에서 인용은 링크 없이 불완전하다.”

기자들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더 좋은 저널리즘’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직접 취재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고, 인용한 정보에 대해서는 명확히 출처를 표기하고 링크까지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투명성과 품질을 한층 높이는 작업이다. 

9) Buttry, S. (2012. 2. 27). 4 reasons why linking is good journalism; 2 reasons why linking is good business. <The Buttry Diary>. URL: <https://stevebuttry.wordpress.com/2012/02/27/4-reasons-why-linking-is-good-journalism-2-reasons-why-linking-is-good-business/>

‘저널리즘 로봇’ 실험하는 독일, 윤리적·법률적 쟁점은?

권용덕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I. 들어가며

인공지능(AI)은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을 할 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AI가 이미지 데이터를 후처리(Post Processing)하여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반도체 회사들은 딥러닝과 AI 구현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인 NPU(Neural Processing Unit)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22년 11월 오픈AI(OpenAI)가 챗(Chat)GPT-3를 발표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킨 이후 챗 GPT-3.5가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챗GPT-4가 유료 회원 상대로 서비스되고 있다.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사전 학습된 생성형 트랜스포머’를 의미한다.¹⁾ 챗GPT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한 학습으로 인간의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 챗 GPT 출시 이후 2개월 만에 전 세계 이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생성형 AI를 향한 큰 관심이 촉발됐음을 알 수 있다.²⁾

1) Perrigo, B. (2023. 4. 13). The A to Z Artificial Intelligence. <Time>. URL: <https://time.com/6271657/a-to-z-of-artificial-intelligence/>

2) 김미정 (2023. 2. 3). 챗GPT, 두 달 만에 월 이용자 1억 명 돌파...틱톡보다 빨랐다. <ZDNet Korea>. URL: <https://zdnet.co.kr/view/?no=20230203153950>

생성형 AI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믿어왔던 직업분야를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다. 이미 날씨, 스포츠, 금융 등 뉴스 제작에 사용되고 있으며, 자동화된 기사작성의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산업 측면에서 생성형 AI가 가져올 순기능과 역기능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역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저널리즘에 이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독일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생성형 AI의 도입이 늦었음을 인식하고 있다.³⁾ 독일 언론사들은 생성형 AI를 기사작성에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하면서도 아직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⁴⁾ 독일기자협회(DJV)는 최근 생성형 AI로 작성된 콘텐츠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입장문을 긴급 발표하기도 했다. 입장문은 “AI가 기자(Redakteur)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입장문은 특히, AI가 윤리와 가치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언론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⁵⁾ 바이에른주(州) 공영방송(Bayerischer Rundfunk)도 AI 활용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AI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필요한 10가지 원칙을 수립하기도 했다.⁶⁾

독일은 로봇이 자동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더라도 저널리스트가 제작과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로봇은 저널리스트의 보조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이 글에서는 저널리즘 영역에서의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윤리적, 법률적 문제를 살펴본다.

II. 생성형 AI의 ‘저널리즘 실험’

생성형 AI의 이용은 다방면에서 가능하다. 자동으로 기사를 작성할 수 있고 간단한 키워드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다.

독일의 유력 출판기업 부르다(Burda)는 2022년 5월 30일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자사의 월간 요리전문잡지인 <리자-요리와 빵굽기>(Lisa-Kochen und Backen)의 최신 특별호에서 ‘99가지 파스타 레시피’(99 Pasta-Rezepte)를 발행했다.

99가지 파스타 레시피를 담은 해당 잡지는 ‘미드저니’(Midjourney)와 ‘챗GPT’ 등 두 가지

3) Kettig, S. (2023). Künstliche Intelligenz im Journalismus – quo vadis? (NEUE GEGENWART), Ausgabe 61. URL: <http://www.neuegegenwart.de/ausgabe61/ki-journalismus.html>

4) Horn, C. (2019. 8. 1). Wenn Computerprogramme Zeitungsartikel schreiben. (NDR). URL: <https://www.ndr.de/nachrichten/netzwelt/Kuenstliche-Intelligenz-im-Journalismus-,kuenstlicheintelligenz128.html>

5) Der Spiegel (2023. 4. 23). Journalistenverband verlangt klare Regeln für Künstliche Intelligenz. (Der Spiegel). URL: <https://www.spiegel.de/kultur/journalistenverband-fordert-klare-regeln-fuer-kuenstliche-intelligenz-a-0c7b909b-53c4-4c7d-badb-2099220d9d19>

6) HMS (2023. 8. 16). Wie Künstliche Intelligenz mehr Ethische Intelligenz in Redaktionen bringen kann. (HMS). URL: <https://www.hamburgmediaschool.com/blog/von-ki-zu-ethi-wie-kuenstliche-intelligenz-mehr-ethische-intelligenz-in-redaktionen-bringen-kann>



〈그림 1〉 키워드 ‘생성형 AI와 저널리즘에 관한 이미지’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Microsoft Image Creator)

위한 목적으로 제작·발행된 것이다. 출판사 측은 AI가 인쇄 및 디지털 제품 제작의 워크플로우(workflow)를 얼마나 의미 있게 지원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 실험을 진행했다고 방송에서 밝혔다. 그러나 요리 이미지와 함께 재료목록 및 요리과정을 텍스트로 설명하고 있긴

생성형 AI로 제작되었다. 미드저니는 잡지에서 활용되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하였고, 챗GPT는 텍스트를 자동으로 작성하였으나 출판사 측은 독자들에게 해당 잡지가 AI를 활용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⁷⁾

제2공영방송 체트테에프(ZDF)에 따르면, 두 AI 프로그램은 요리 레시피에 대해 사전에 특별히 학습을 하지 않았으며, 출판사 담당 직원이 챗GPT가 작성한 텍스트에 약간의 도움을 준 것 외에는 모든 이미지와 텍스트는 자동으로 생성되었다. 특히 이번 특별호는 부르다 출판사 측이 생성형 AI를 실험하기



〈그림 2〉 ‘99가지 파스타 레시피’ 표지



〈그림 3〉 ‘99가지 파스타 레시피’ 삽화

7) Heinrich, J. (2023. 5. 20). Wenn die KI komplette Zeitschriften erstellt. (ZDF). URL: <https://www.zdf.de/nachrichten/panorama/ki-journalismus-chatgpt-midjourney-zeitschrift-burda-verlag-100.html>

하지만,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 이미지가 정교하지 않다.⁸⁾ 이에 AI 활용에 있어 편집자의 창의성과 품질 관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일간 슈투트가르트 차이퉁(Stuttgarter Zeitung)은 미세먼지 레이더를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취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지역 미세먼지 현황을 보도하고 있다.⁹⁾ 또한, 두이스부르크 지역방송 '슈튜디오 47'(Studio 47)은 '봇캐스트'(BotCast)라는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텍스트 작성, 이미지 검색 및 편집, 더빙 등 단편 뉴스영상을 제작한다. 이를 통해 최대 1시간 30분 걸리던 것을 10분 만에 제작해내고 있다.¹⁰⁾ 지역 유력 매체인 노츠 미디어그룹(NOZ Mediengruppe)은 AI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도구를 직접 개발 중이다. 그 중 하나인 텍스트마틱(Textomatic)이라는 생성형 AI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州)(Schleswig-Holstein)의 지역 일기 예보를 제공하는 등 실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튀빙겐주(州)(Tübingen)의 사이버 밸리(Cyber Valley)에서는 AI를 통한 라디오 진행자의 음성을 합성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이 음성 합성기술은 청취자가 새벽에도 자신이 선호하는 라디오 교통방송 진행자의 음성을 들으며 운전할 수 있게 하여 청취자와 방송사 측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¹¹⁾

한편, 생성형 AI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인간과 유사하게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데 있다.¹²⁾ 저널리스트는 이를 도구삼아 산재해 있는 소셜미디어 게시물 속에서 뉴스가치가 있는 사건이나 스토리를 선별하여 취재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보검색을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하여 언론에 아직 보도되지 않은 사건이나 논쟁을 발굴해낼 수도 있다.¹³⁾

앞서 언급한 노츠 미디어그룹의 개발팀인 'HHLab'은 소셜미디어에서 혐오 댓글을 걸러낼 수 있는 생성형 AI를 개발했다.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 온라인판은 이를 활용해 혐오 댓글을 걸러내고 있으며, 인포그래픽 제작, 기사 작성, 오디오 제작 등에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저널리스트의 취재 보도를 위한 작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8) <그림 3>에서 부자연스러운 새우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위의 ZDF 기사(주 7)를 참조.

9) Kettig, S. (2023). Ebenda.

10) Deutschlandfunk (2023. 3. 2). Was kann KI im Journalismus? <Deutschlandfunk>. URL: <https://www.deutschlandfunk.de/ki-im-journalismus-100.html>

11) Horn, C. (2019. 8. 1). Ebenda.

12) Pinker, A. (2023. 3. 19). Generative KI: Die neue Ära des Journalismus? <Medialist Innovation>. URL: <https://medialist.info/2023/03/19/generative-ki-die-neue-aera-des-journalismus/>

13) LMU (2022. 2. 19). Forschungsprojekt: KI im Lokaljournalismus. <LMU>. URL: <https://www.lmu.de/de/newsroom/newsuebersicht/news/forschungsprojekt-ki-im-lokaljournalismus.html>

HHLab의 차기 개발 목표는 언론사가 독자의 관심과 취향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콘텐츠 AI” 소프트웨어이다.¹⁴⁾

III. AI가 만든 저널리즘과 윤리적 쟁점

1.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

AI를 저널리즘에 활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장점과 함께 수많은 문제점들도 존재한다. 현재 챗GPT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챗GPT-3.5를 출시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사이 챗GPT-4가 대중에게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저널리즘에 가져올 윤리적·법률적 문제가 대두된다.

윤리 분야 전문가들은 AI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주로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AI가 편향적 학습 데이터로 인해 편견을 내재화할 수 있고, 이로부터 차별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둘째, AI가 점점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경우 노동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셋째, 허위정보의 생성 및 확산 가능성이다.

독일 슈투트가르트(Stuttgart) 대학교의 티로 하겐도르프(Thilo Hagendorff) 박사는 윤리적 위험과 관련하여 7가지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설명한다.

“첫째, 고정관념이나 유해한 콘텐츠를 생성함으로써 나타나는 차별의 위험성이다. 둘째,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셋째, 허위의 정보를 자동 생성할 수 있다. 넷째, 이 AI는 IT 공격용 코드를 생성하는 데 오용될 위험, 즉 이용자의 악의적 사용 의도에 따른 위험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이용자가 이 AI를 의인화하거나 과도하게 신뢰하여 사적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AI의 결과물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다. 여섯째, AI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존재한다. 일곱째, AI를 학습시키고 사용할 때 소요되는 막대한 전력소비는 생태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¹⁵⁾

14) Horn, C. (2019. 8. 1). Ebenda

15) Science media center germany. (2023. 4. 3). Risiken aktueller KI-Forschung. <SMCG>. URL: <https://www.science-mediacycenter.de/alle-angebote/rapid-reaction/details/news/risiken-aktueller-ki-forschung/>

하겐도르프는 윤리적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AI 윤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이미 존재하지만¹⁶⁾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이상적이라 기술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없음을 지적한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가져올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¹⁷⁾ 따라서 AI 윤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원칙을 나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원칙을 강제할 수도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인간과 AI 식별 가능해야

앞서 지적한 윤리적 쟁점과 관련하여 튀빙겐(Tuebingen) 대학교의 예시카 헤젠(Jessica Heesen) 박사는 생성형 AI의 빠른 발전이 인간과 기계의 의사소통을 구분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한다. 헤젠은 언어에 대해 단순히 콘텐츠를 전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관계’를 구축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인간과 기계 사이의 소통에 있어 신뢰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 콘텐츠를 만든 주체가 사람인지 AI인지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소통의 진실성과 목적을 판단할 수 있도록 AI가 제작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에 의무적으로 식별표(label)를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헤젠은 거대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AI 연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활동을 통해 축적된 막대한 데이터¹⁸⁾를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AI를 설계할 때 시민이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인간의 복리에 기여하는 본래의 연구목적에 맞지 않음으로써 연구의 오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한다. 그는 “기술은 인간의 가치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⁹⁾ 실제로, AI 이용이 증가하면 기존 저널리스트에게는 일자리 상실, 독자에게는 AI가 작성한 기사에 대한 신뢰성 상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위험성으로 인해 이 연구분야의 저명한 연구자들은 “챗GPT-4보다 더 강력한 AI 시스템 개발을 6개월간 미룰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²⁰⁾

AI가 인간의 통제 하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저널리즘 영역에서 AI를 ‘보조수단’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체’적인 시각이다. 저널리스트는 편집

16) BMWK (2021. 9. 1). Ethische Leitlinien für Künstliche Intelligenz. <BMWK>. URL: https://www.bmwk.de/Redaktion/DE/Infografiken/Schlaglichter/2021/09/ethische-leitlinien-fuer-kuenstliche-intelligenz-download.pdf?__blob=publicationFile&v=1

17) Science media center germany. (2023. 4. 3). Ebenda.

18) 독일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수집한 이용자들의 막대한 데이터에 관한 권리 주체의 귀속 문제를 ‘데이터소유권(Dateneigentum)’이라는 개념 하에 논의하고 있다.

19) 예시카 헤젠의 주장은 Science media center germany. (2023. 4. 3). Ebenda.

20) Science media center germany. (2023. 4. 3). Ebenda.

실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주체이자 ‘책임’을 지는 주체여야 한다. 또한 AI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별표’를 부착하게 하여 독자로 하여금 해당 콘텐츠가 AI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²¹⁾ 이렇게 함으로써 신뢰 상실의 위험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독일 법학계에서는 주로 ‘로보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권리와 책임의 귀속, 그리고 창작물에 대한 법률적 보호(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와 저널리즘 로봇이 노동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IV. 독일의 ‘로보 저널리즘’을 둘러싼 법률적 논의

1. 로보 저널리즘의 범위와 기본법

로보 저널리즘(Robo-Journalismus)²²⁾은 챗GPT의 성공적인 출시에 앞서 독일 법학의 영역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개념이다.²³⁾ 로보 저널리즘은 “반자동 혹은 완전 자동으로 텍스트를 생산하는 인공시스템”²⁴⁾을 의미하며, 저널리스트로서 기능하는 “저널리즘 로봇 (Journalismusroboter)”을 통해 실현된다. 다만, 저널리즘 로봇은 단순히 ‘자동로봇’에 불과하다. 독일 공업규격인 ‘DIN19233’은 자동로봇을 “미리 결정된 의사결정 규칙에 따라 단계별로, 또는 지정된 관계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동작이 결정되고 입력 및 상태 변수로 출력 변수가 형성되는, 스스로 작동하는 인공시스템”²⁵⁾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저널리즘 로봇은 편집자의 개입 없이 전체 또는 일부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서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활용된다. ‘DIN19233’은 자동로봇의 자동화 단계를 완전 혹은 반자동으로 구분한다. 완전 자동은 “스위치 온 또는 오프 프로세스를 제외하고 해당 시스템의 모든 기능이 자동화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시스템이 반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개입이나 안내 없이 독립적으로 저널리즘 작업을 수행하는 “저널리즘 로봇”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²⁶⁾

21) Weberling, J. (2018). Ebenda., S. 735, 739.

22) Uphue, S., in: Hoeren, u.a. (Hg.), Handbuch Multimedia-Recht, 58.EL März 2022, Teil 15.3 Big Data in Online-Medien und auf Plattformen, Rn. 63.

23) Weberling, J. (2018). Ebenda.

24) “로보 저널리즘(Robo-Journalismus)”과 “로봇 저널리즘(Roboterjournalismus)”은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 베버링(J. Weberling)의 문헌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 문헌에서는 “로보 저널리즘”으로 칭하여 해당 개념을 설명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25) Begriffe zur Automatisierung (DIN 19233), veröffentlicht unter <https://docplayer.org/601418-Begriffe-zur-automatisierung-din-19233.html>

26) Weberling, J. (2018). Ebenda., S. 735.

법률적 관점에서 언론의 개념에 로보 저널리즘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 제5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의 의미와 보호 범위에 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BVerfG)는, 공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고 검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유언론이 자유국가의 필수 요소이며, 특히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치적 자유 언론은 현대 민주주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라고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²⁷⁾

기본법에서 언급된 ‘언론’ 개념은 “인쇄물” 또는 “인쇄된 이미지”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기본법은 “언론의 자유와 방송 및 영화를 통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라고 하여 방송과 영화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여기에서 해당 조항은 언론을 광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언론의 개념에 대해 발전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²⁸⁾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출판물의 특정 형태와 무관하게(출판물이 인쇄된 형태이든 다른 형태로 존재하든지 무관하게) 이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에 출판물이 관련되어 있는 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한다.²⁹⁾ 따라서 출판물의 기술적인 제작과정, 배포 혹은 제작물의 내용과 무관하게 출판물이 해당 의사소통 과정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를 ‘언론’의 개념으로 보호하고 있다. 기본법상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된 언론의 개념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것은 옳지 않고, ‘통합적’ 시각에서 ‘언론행위’를 포괄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³⁰⁾

기본법은 일반 대중에게 배포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인쇄물뿐만 아니라 영화 및 방송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정보 매체를 포함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전자적 배포의 형태(로보 저널리즘)도 기본법상 언론의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³¹⁾

2. ‘저널리즘 로봇’에 대한 법률적 시각

1) 책임 귀속

저널리즘 로봇이 주관적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앞서 언급한 ‘보조수단’으로써 생성형 AI를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다. 저널리즘 로봇은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저널리즘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아직까지 이 로봇은 저널리스트의 개입

27)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슈피겔(Spiegel) 판결’ 이후에 현대 민주주의에서 언론자유 의미와 보호 범위에 대해 일관된 판결을 내놓고 있다. 언론자유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주관적 기본권이다. Vgl. BVerfG NJW 1966, 1603 und 1605.

28) BeckOK GG/Schemmer, 55. Ed. 15.5.2023, GG Art. 5 Rn. 42 f.

29) BVerfGE 66, 134; 107, 280.

30) Hömig, D./Wolff, H. (2022)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13. Aufl., GG Art. 5 Rn. 14.

31) Mann/Smid, in: Spindler/Schuster(Hg.), Recht der elektronischen Medien, Presserecht Rn. 5 f. dazu Weberling, J. (2018). Medienrechtliche Bedingungen und Grenzen des Roboterjournalismus. (NJW), S. 735, 737.

하에 콘텐츠를 자동으로 제작한다. 저널리스트가 일상적인 제작과정에서 모든 유형의 출판물에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결정한다. 기사의 배포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익과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면 각각의 경우에 개별적인 균형조정이 필요한데, 저널리즘 로봇이 지능적으로 프로그래밍되더라도 이를 수행할 수는 없다.³²⁾ 또한 기본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권이다.³³⁾

2) 저작권과 노동법의 적용 가능성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 활동에 의한 저작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기계나 컴퓨터의 활동이 인간의 창작 활동을 대체하는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자연인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³⁴⁾ 반면에 저작권자가 컴퓨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이용한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저작권자가 컴퓨터에 적절한 지시 및 명령을 하고, 이에 따라 결과가 명확하게 계획되고 결정된다면 인간의 창작 활동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³⁵⁾ 따라서 보조수단으로써 이용되는 저널리즘 로봇은 저작자(편집자나 저널리스트)를 대체할 수 없으며, 저작권법상 저작자에서 제외된다.

저널리즘 로봇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 로봇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다. 편집자나 저널리스트가 AI 소프트웨어를 보조도구로써 사용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윤리적·법적 책임을 진다. 그들의 법적 책임은 주언론법(Ladespressegesetze)에 따라 판단한다. 이 소프트웨어가 저널리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 보조적 도구의 사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현존하지 않는다.³⁶⁾

V. 마치며

생성형 AI는 저널리스트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온다. 생성형 AI는 날씨, 스포츠, 금융 등 뉴스 제작에 이미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윤리적·법률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생성형 AI가 점차 저널리스트의 업무를 대체함으로써 저널리스트의 일자리 상실 위험과 아울러 편향된 데이터를 통한 학습으로 ‘편견을 내재화’할 수 있다는 점, 허위 정보의 생산 및 확산

32) Weberling, J. (2018), Ebenda., S. 735, 737 f.

33) BVerfG NJW 1966, 1603 ff.

34) Schricker/Loewenheim/Loewenheim/Leistner UrhG § 2 Rn. 38 f.

35) Schricker/Loewenheim/Loewenheim/Leistner UrhG § 2 Rn. 40.


36) Weberling, J. (2018), Ebenda., S. 738.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 윤리적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AI로 허위정보를 생성할 수 있고, 또 이를 걸러낼 수도 있어 ‘객관성’, ‘진실성’ 등과 같은 가치를 속성으로 하는 저널리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다면 생성형 AI가 저널리스트에게 가져다줄 이 점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인다. 앞서 헤젠(J. Heseen)은 언어를 ‘관계구축’의 수단으로 보았다. 생성형 AI가 제작한 콘텐츠와 독자의 관계에서 신뢰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콘텐츠 제작자가 사람인지 AI인지 독자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AI가 제작한 콘텐츠에 식별표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헤젠의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로부터 수집되기 때문에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AI 설계와 통제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즉,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게 데이터 이용의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비윤리적인 AI 개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이용자들의 권한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AI를 연구 개발하는 데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생성형 AI는 저널리스트에게 보조수단으로써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독일 법학계의 ‘로보 저널리즘’과 관련된 논의는 AI의 이러한 역할을 잘 보여준다. 저널리스트의 개입 없이 ‘완전 자동’으로 저널리즘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저널리스트는 저널리즘 로봇을 보조수단으로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권이 여전히 저널리스트에게 있다는 것이 독일 법학계의 시각이다. 보조수단으로써 저널리즘 로봇을 사용하여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리의 귀속 주체는 저널리스트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저널리즘 로봇은 저작권 및 노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저작권법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로봇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기본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는 저널리즘 로봇이 아닌 ‘인간’ 저널리스트가 향유한다.

무엇보다 편집자와 저널리스트가 저널리즘 로봇을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을 하는 현상은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저널리즘 로봇이 저널리스트를 완전히 대체하여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날까지 아직은 시간이 있다. 생성형 AI로 창출하는 저널리즘의 윤리적·법률적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저널리스트가 로봇의 콘텐츠 제작 전 과정을 통제하고 그 결과물을 감독해야 한다는 독일의 사례에서 기술 남용을 막고 인간적 가치에 따라 저널리즘을 설계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언론조정, 이렇게 해볼까요?

최승재 변호사(법학박사), 서울제8중재부 중재위원

I. 들어가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명칭은 중재위원회인데 통계를 보면 중재(arbitration) 건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조정(mediation)사건을 담당하고 있다.¹⁾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으로 직무를 하면서 1년이면 100건 이상의 조정사건을 담당하고 진행하게 된다. 이런 사건이 한 해 한 해 누적되면서 이제 수 백 건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에 대한 이해도 많이 늘었고, 조정에 대한 이해도 늘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새로운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관들로부터 메일을 받을 때마다 늘 고민하고 있다.²⁾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조정기구들이 있고 이 기구들의 조정은 '조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행정

1) 조정은 2020년 3924건, 2021년 4278건, 2022년 3175건인 반면, 중재는 2019년 이후 없는 것으로 통계상 확인된다. URL: https://www.pac.or.kr/kor/pages/?p=217&b=B_1_6&bn=3050&m=read&nPage=1&cate=PD01&i=TITLE&s= (2023. 8. 4. 최종검색)

2) 필자는 개인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도 하지만 법원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인으로서 중재 외에 조정업무도 진행하고, 법원연계조정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의 분쟁조정도 하면서 다양한 기관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인 조정에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한편 변호사로서 민사조정법상 법원조정, 법원에서 조정회부 한 사건의 조정은 물론 위 기관 외에도 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조정 등 여러 기관에서의 조정에도 대리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형 조정기구의 경우에는 집단적 조정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집단조정은 환경분쟁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낙동강 폐놀 방류사건을 조정으로 처리한다고 보면 같은 쟁점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사건들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조정을 하여 처리하기 보다는 집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환경분쟁조정 경우에는 집단적 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의 특성을 감안한 조정에서의 노하우와 일반적인 조정에서의 노하우를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물론 필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이 있을 수 있다. 골프에서 스윙의 정답은 없지만 정석은 있다는 격언이 있다. 조정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본다. 하지만 이런 노하우의 공유과정을 통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에 이 글을 쓴다. 아래에서는 조정에서 공통되는 노하우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서의 특징을 감안한 노하우를 기술한다.

II. 조정 노하우 나눔

1. 철저한 사전 준비: '조정은 예술, 중재는 과학'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이라고 하면 조정(調停)과 중재(仲裁)가 대표적이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이 있다. 환경분쟁조정 경우에는 알선과 재정 등을 조정(調整)이라는 표제 하에 조정(調停)과 중재(仲裁)에 더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과 중재를 두고 있다. 이 둘은 비교해보면 조정은 예술(art)이고, 중재는 과학(science)이다. 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언론사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들의 분쟁에서 최대한 양자가 의견일치를 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법리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신청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점에서 이 사건 조정에 이르게 되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언론보도와 사건기록을 보면서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법원조정도 마찬가지이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의 경우에는 특히 감정적으로 다친 신청인들을 보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고민을 사전에 해 두는 것이 조정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이런 사전준비는 조정기일에서도 중요하다. 신청인이 중재부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중재부가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해 질문을 하면 조정분위기가 훨씬 적극적으로 변한다. 함께 중재위원을 했던 위원들 중에서 A위원이 이 점에서는 탁월했다. 사건에서 쟁점이 되

는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제출된 것에 더해서 공부하고 조사를 해 와서 당사자들에게 확인을 했다. 처음에는 중재위원들이 뭘 알까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거나,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정에 대응하는 당사자가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조정성립에 기여한다. 만일 조정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재위원들이 자신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때 '전문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철저한 사전준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상을 긍정적으로 만든다.

2. '선입견 없이' 기록 보고 당사자 주장 듣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담당하는 중재위원이 되었다는 것은 언론계나 학계, 실무계에서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이 가지는 장점이다. 원래 조정은 동네의 촌로(村老)가 마을에서 발생한 분쟁을 오랜 연륜과 경험, 그리고 지혜를 바탕으로 해결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에 대하여 잘 아는 전문가들이 언론관련분쟁에 대해서 각자의 주장을 듣고 각자의 사정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적절한 권고를 하는 것은 조정이 가지는 미덕이다.

조정은 사실 중재와의 관계에서 보면 당사자들에 대해서 결론을 구속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점에서 미약한 분쟁해결수단이다. 그럼에도 조정이 가지는 강점은 당사자들을 수궁시키는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지혜에 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에 불과할 수 있는 조정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신속성과 유연한 대처와 같은 조정특유의 장점과 언론중재법이 가지는 여러 특징들이 결합되어 조정성립에 이르기도 하지만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재위원의 역량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중재위원이 조심하여야 하는 것이 선입견이다. 물론 인간인 이상 우리는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입견이 나쁜 것도 아니다. 선입견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고 틀이다. 우리들은 모두 삶 속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서 나름의 시각 내지 정보판단의 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틀은 대개의 경우 바르게 작동한다. 확률적인 정확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결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은 무결(無缺)하지 않다. 이 점을 인정하고 조정심리에 임해야 한다.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건을 기계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는 조정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연한 분쟁해결을 저해한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그래야 확률적 오류 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분쟁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3. 사전준비회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정위원들의 의견 경청하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부는 5인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단독조정, 법원조정센터의 조정 등과 비교해볼 때 구성면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언론조정의 경우 중재부장을 중심으로, 각 위원들이 사전회의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조정을 진행하면서 당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고민하고 사건에 임하게 된다. 물론 사건을 하다 보면 조정기일에서의 심리는 애초에 예상했던 방향과 같이 흘러가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사전준비회의를 잘 활용해야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 이 자리는 단순히 조사관의 브리핑을 듣고 심리방향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록을 미리 보고 왔지만 놓치고 있었던 점들을 보고 듣게 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엄청난 장점은 언론계에서 최고로 인정받았던 분들이 위원이 된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각자 경험과 지혜들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

조정の場合は 판결과 다른 점이 있다. 판결은 판결서에 적힌 결론이 법원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부여한 권위를 타고 당사자를 바로 구속한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권위(권한)에 의해서 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중재위원이 원하는 결론을 수긍하여야 조정이 성립되는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듣다 보면 사건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지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물론 조정심리는 중재부장이 진행하지만, 사전회의를 통해서 5인의 위원들이 각자 어떤 역할 분담을 하고 어떤 식으로 조정기일에서의 질문을 해나가고 의견을 제시하여 권유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전준비회의는 정말 중요한 절차이다.

4. 부제소특약에 대한 고지 등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하다 보면 조정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절차로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애초에 조정의사가 없는 사건이 있다. 남소(濫訴)로 보이는 경우이다. 물론 이런 사건도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하려고 할 필요가 있지만 완고하게 조정의사가 없거나 대리인이 이미 조정하지 않도록 지침을 가지고 온 경우에는 조정을 오래 끄는 것이 양당사자에게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경험적으로 하나의 조정사건을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진행하는 경우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정비례는 아니더라도 많았던 것 같다. 통계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 감(感)이다. 역으로 이런 시간을 쓰면서까지 조정에 시간을 들인다는 것은 양당사자가 조정의사가 있을 때이며, 이런 당사자들은 중재부가 좋은 대안을 내면 조정을 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자극적인 기사 제목에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조정신청을 하고, 언론도 이미

보도된 기사의 제목에 굳이 해당 표현을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처음에는 감정이 앞서서 시간이 걸리지만 점차 중재부의 진심이 전달되면 조정성립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로 애초에 안 될 사건에 중재부도 당사자들도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무제한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시간을 잘 안배해야 출석요구를 받고 기다리는 당사자들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럴 경우 신청인의 조정의사가 없는 것 같으면 부제소특약의 존재를 고지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표준적인 조정권고문안이 합의를 하게 되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하는 것임을 알려주면 더 이상 조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직접적으로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신청인은 조정할 의사가 없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적절한 질문은 아닌 것 같다.

피신청인인 언론사의 경우 대리권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중재부가 이렇게 권고를 하면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사를 확인하면서 대리권이 있는지를 재차 확인하면 일정 이상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수권이 없다는 의사를 제시할 기회를 주게 되어 무익한 전개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최선을 다해서 조정권고를 하여도 당사자들이 우리의 노력에 반응을 하지 않아 부득이한 상황이 될 때 즉, 중국적으로 조정불성립이 될 상황에서 확인을 하는 방법의 하나일 수 있다고 본다.

5. 속행기일의 활용

법원에서의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한 경우 경험적으로 당연히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속행을 할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다. 물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익숙한 대리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피신청인이 되는 언론사의 대리인인 변호사들보다는 신청인 대리인인 변호사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실무상 속행기일을 잡지 않고 증거조사도 법원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이라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의 특성을 감안하면 타당한 절차진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속행기일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때가 있다. 반대로 당사자들이 원해도 속행기일을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때도 있다고 본다. 앞의 경우는 당사자 등 일방이 조정문안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합의는 거의 성립되었지만 조정문안에 대해서 특히 신청인이 의견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때에는 중재부에 문안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보다는 속행기일을 잡아서 문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2주 정도 뒤의 빠른 기일을 잡아서 차회기일에 문안을 확정하여 조정을 성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면, 분명 조정기일 시작 전에 대리권을 확인할 때는 대리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조정이 거의 성립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인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 때에는 오히려 잠시 정회(停會)를 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연락을 해 대리권을 확인하여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럴 경우 속행기일을 잡아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애초에 전권을 위임받고 왔다고 한 대리인의 언행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도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하게 되므로 가급적 속행대신 정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II.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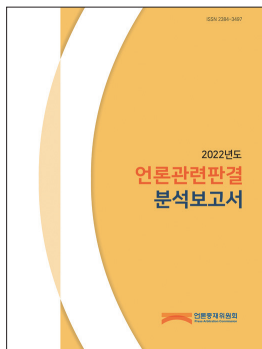
이 글에서 언급한 노하우 외에도 조정진행과정에서 필자가 생각하고 실행하는 여러 방안들이 있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이를 모두 공유하지 못하는 점은 다음 기회를 위한 여백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학술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의 특징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기관에서 다수의 조정사건을 조정위원으로서 또는 대리인으로서 다루면서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물론 노하우라고 하지만 실제 들어보면 별 것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고수들이 다수 있으실 것이고, 어떤 것들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세상일은 원래 당연한 것,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에서 탁월함이 나오는 법이라는 점에서 부족하지만 경험에 근거한 생각들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물론 필자가 노하우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해서도 기탄없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한다. 



하반기 재·보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발족

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8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에는 심창섭 위원(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부위원장에는 이은식 위원(전 충남·충북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8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90일간 운영됩니다.



〈202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 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202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2022년에 선고된 언론보도 관련 민사판결 173건을 수집해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피고 매체 중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포함된 사건을 대상으로 양적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예비법조인 연수 실시

위원회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에 걸쳐 전국의 법학전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제2차 예비법조인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언론법제 및 언론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석형 위원장의 특강과 현직 판사 및 방송사 법무담당자 등의 강의로 구성했습니다.



부산지역 대학언론 기자 대상 교육 연수 및 간담회 개최

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부산에 소재한 대학언론 기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연수 및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사무소 강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동아대학보> 및 <부경대신문> 등 7개 대학 언론사에서 총 2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남승균 부산사무소장이 언론법제 및 언론분쟁 해결 관련 전문 교육을 실시했으며, 김태호 홍보협력팀장이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위원회 관련 다양한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지역 언론사 대표 간담회 개최

이석형 위원장은 지난 9월 5일 광주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만나 간담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조영범 중재부장(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및 광주중재위원들과 김선남 전남매일 대표이사, 박준일 남도일보 대표이사,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임채영 KBC광주방송 대표이사, 김낙곤 광주MBC 대표이사가 참석해 광주지역의 주요 언론 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부합하는 언론피해구제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될수록 언론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제도의 의미도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중재 가을호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조정중재제도에 관한 주요 현안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언론중재에서 조정의 '원리'와 '실무'의 조화를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제3호 발간 예정



언론중재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심도있는 학술적 논의를 위해 <미디어와 인격권>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인격권>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이며 연 3회 발간(4월, 8월, 12월)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획논문 주제

온라인 상 극단적 표현(경계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 그리고 피해구제



연구논문 주제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언론법제 관련 판례평석 포함)



응모자격

1.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2. 관련분야 전문가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발간일

2023년 12월 15일 발간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시거나 연구팀(02-397-3042)으로 문의바랍니다.

*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